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9-13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방송발전기
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주관연구기관 : 삼 일 회 계 법 인
책임연구원 : 김 병 목(삼일회계법인)
연 구 원 : 김 대 식(삼일회계법인)
 홍 종 락(삼일회계법인)
 박 병 용(삼일회계법인)

목 차

요약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
 - 1) 연구의 필요성 40
 - 2) 연구의 범위 42
- 2. 연구의 추진방법 45
 - 1) 연구 수행 체계 45
 - 2) 단계별 수행내용 45

II 방송발전기금 및 수입 현황 분석

- 1. 방송발전기금 일반 현황 48
 - 1) 기금의 설립 48
 - 2) 기금의 조달 48
 - 3) 기금의 운용 51
- 2. 방송발전기금 자산의 구성 분석 53
 - 1) 결산대차대조표에 근거한 자산 분석 54
 - 2) 유형별 자산의 구성 57
- 3. 발생원천별 수입의 구성 분석 58
- 4.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 현황 59

III

수입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검토

1. 수입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기본전제 검토 62
2.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검토 64
3. 타 기금 수입추계 사례 검토 67
 - 1) 방송발전기금과 수입 내역이 유사한 기금 선정 67
 - 2) 유사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 70
4. 유사연구보고서 사례 검토 73
 - 1) 통신사업자 부담금의 증장기 기금수입 전망 보고서 74
 - 2) 융자원금 회수·이자수입 추계모델 개발 및 수입계획
전망 보고서 75
5. 과거 통계자료 분석 77
6. 수입추계 개선방향 77

IV

법정부담금및출연금 수입추계방법

1. 법정부담금및출연금 개요 78
 - 1) 법정부담금및출연금 개요 78
 - 2)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입계획 대비 실적 비교 79
 - 3)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과 조달금액 81
2.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84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84
 -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85
 - 3) 과거실적 분석 및 징수부과액 재추정 87
 - 4)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분석 89
 - 5)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92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98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98
 -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98

3) 과거실적 분석	100
4)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01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104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104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105
3) 과거실적 분석	106
4)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08
5.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10
1)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110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110
3) 과거실적 분석	112
4)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13
6. 민간출연금	115

V

융자원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융자사업 개요	116
2. 융자원금 회수액 추계	117
1) 기존 융자금 실적 및 증감 내역 분석	117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119
3) 융자금 회수액 수입추계 개선방안	121
3. 융자금 이자수입 추계	124
1) 융자금 이자수입 현황 분석	124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125
3) 융자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126

VI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공공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개요	129
2.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	130

VII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예치금(금융자산) 개요	131
	2. 예치금 회수액 추계	133
	3. 예치금 이자수입 추계	134
	1) 예치금 이자수입 현황 분석	134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134
	3) 예치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136
VIII	기타사항	
	1.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도출	138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 기금 수입규모 산출	138

표 목 차

〈표 1〉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 실적	41
〈표 2〉 수입유형별 계획 대비 실적 비교	43
〈표 3〉 방송발전기금 운용실적	53
〈표 4〉 각 회계연도별 대차대조표	54
〈표 5〉 장단기대여금의 구성	55
〈표 6〉 만기보유증권의 구성	55
〈표 7〉 매도가능증권, 장단기금융상품의 구성	56
〈표 8〉 미수금의 구성	57
〈표 9〉 발생원천별 수입의 구성	58
〈표 10〉 방송발전기금의 수입과 관련 있는 관·항·목	59
〈표 11〉 발생원천별 수입항목과 정부세입예산의 목과 비교	60
〈표 12〉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비교	61
〈표 13〉 각 기금별 수입규모	68
〈표 14〉 방송발전기금과 수입유형이 유사한 기금	69
〈표 15〉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징수 개요	79
〈표 16〉 방송사업자별 수입계획 대비 실적 비교	80
〈표 17〉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81
〈표 18〉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및 징수부과액	82
〈표 19〉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83
〈표 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83
〈표 21〉 민간출연금의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84
〈표 2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개요	85
〈표 23〉 사업자 그룹별 방송광고매출액 추이	88
〈표 24〉 사업자 그룹별 법정부담금 징수율 추이	88
〈표 25〉 사업자 그룹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재추정	89
〈표 26〉 5월까지의 누적 방송광고매출액의 과거연도 비율 추이	94
〈표 27〉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및 평균 징수율 추정	96

<표 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98
<표 2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 및 방송관련매출액 추이	101
<표 3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연도별 법정부담금 평균징수율	101
<표 3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중평균성장률	103
<표 3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중평균징수율 추정	104
<표 3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105
<표 34>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107
<표 35>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107
<표 3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영업이익의 가중평균성장률 ..	109
<표 37>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109
<표 38> 위성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개요	110
<표 39> 스카이라이프 매출액 및 방송관련매출액 추이	112
<표 40>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중평균성장률	114
<표 41> 민간출연금 수입계획	115
<표 42> 프로그램제작비용자와 디지털방송전환용자의 개요	116
<표 43> 프로그램제작비 용자금 증감 내역 분석	117
<표 44> 프로그램제작비 용자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117
<표 45> 디지털방송전환 용자금 증감 내역 분석	118
<표 46> 디지털방송전환 용자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118
<표 47> 기타민간용자금 증감 내역 분석	119
<표 48> 용자종류별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의 만기구조	122
<표 49> 용자종류별 용자금 대비 조기회수비율	123
<표 50> 용자금 평잔 대비 이자수입 비율	125
<표 51> 공공기금 예탁원금 증감 현황	129
<표 52> 공공기금 예탁금이자수입 현황	129
<표 53> 연도별 금융자산 증가율	131
<표 54> 금융자산의 구성내역 분석	133
<표 55> 예치금 회수액 수입계획 대비 실적 분석	133
<표 56>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13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수행체계	45
---------------------	----

요 약 문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 과제명 :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관 : 삼일회계법인
- 연구책임자 : 김 병 목
- 연구기간 : 6개월 (2009.4.30 ~ 2009.10.30)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방송발전기금의 관리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방송사업자의 수익 증대 등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수입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과 실적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특히 보다 정확한 수입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예측하지 못한 방송시장 및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 기금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의 정확한 예측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처럼 계획 대비 실적에 과도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나 기금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입실적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계방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범위

수입추계방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 기금 수입규모 산출 과제인 경우 2008년 12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입법 예고된 후 국회에 제출되어 연구보고서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며, 통과 여부 및 통과 시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여 해당 과제의 경우 추후 과제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 타 기금에서의 수입추계방법 조사
-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 : 방송발전기금 수입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수입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용자원금 회수액 등에 보다 집중하여 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함.
-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도출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 기금 수입규모 산출

4) 연구의 추진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수행 체계 하에 수행되었다.

(1) 연구용역 수행계획 수립

(2) 기금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한 이해

- 방송발전기금 및 주요 수입항목에 대한 이해
- 기획재정부에서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실적 비교 분석
- 주요 항목별 수입추계방법에 대한 이해 : 과거연도 수입추계 방식 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 수입추계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이해

(3)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 타기금 수입추계 사례 분석 : 전체 62개 기금 중 방송발전기금의 수입 유형 및 성격과 유사한 기금을 선정하여, 해당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추계방법 사례를 분석한다.
- 유사 연구보고서 분석 : 기금운용계획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와 유사한 연구보고서 사례를 탐색하여 분석한다. 또한, 수입추계 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인 시장규모 추정방법, 이자율 적용방법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사례를 탐색하여 분석한다.
- 기금운용계획/결산 심사보고서 분석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의 국회 보고자료인 매 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검토보고서 및 기금결산 심사/검토보고서를 분석한다.
- 수입원천별 과거 통계자료 분석 : 수입추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입원천별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인터뷰

(4)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 및 Feedback

- 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
- 재산수입(이자수입) 추계 개선방안 도출
- 예치금 및 용자원금 회수액 추계 개선방안 도출
- 발주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의 Feedback 반영

(5) 결론도출 및 보고서작성

2. 방송발전기금 및 수입 현황 분석

1) 방송발전기금 일반 현황

(1) 기금의 설립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6조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고 있던 공익자금이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2) 기금의 조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③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④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재산수입(이자수입) 등의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통하여 각 방송사업자별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에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금의 운용

방송발전기금의 운용금액은 방송콘텐츠활성화사업, 시청자복지증진사업, 방송기반강화사업, 방송교류협력활성화사업 등 기금사업에 집행되는 금액과 기금관

리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방송정책행정지원에 집행되는 금액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방송발전기금 자산의 구성 분석

일반적으로 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수입은 해당 법인의 주된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다.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의 경우에도 그 발생원천에 따라 크게 방송발전기금의 주된 활동인 법정부담금 징수로 인한 수입과 방송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을 적절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입이 발생하는 유형과 성격을 분석하여 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수입별로 그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1) 결산 대차대조표에 근거한 자산 분석

방송발전기금의 각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자산 구성을 분석하면, 2008년말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장단기대여금 40,555백만원, 만기보유증권 30,000백만원, 장단기금융상품 121,600백만원, 매도가능증권 148,446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유형별 자산의 구성

방송발전기금의 매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와 주요 자산의 구성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방송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6종류의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된 자산 종류별로 발생하는 수입을 파악하여 그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용자원금 :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디지털방송전환용자금, 기타민간용자금
2. 금융기관예치금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기타민간예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4.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금(*)
5. 미수금 : 법정부담금미수금, 민간출연금 미수금 등
6. 기타자산 :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미수수익, 보증금 등

(*)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의 경우 2009년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 이후 시점에는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에서 제외함.

3) 발생원천별 수입의 구성 분석

방송발전기금 자산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바를 통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을 발생원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종류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원천	수입 유형	세부 수입항목
1.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1. 법정부담금	1.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4.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2. 방송사업자 출연금	
2. 용자금	1. 용자원금 회수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원금 회수 2. 디지털방송전환용자원금 회수 3.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2. 용자이자수입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 이자수입 2.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이자수입 3. 기타민간용자 이자수입(*)
3. 금융기관예치금	1. 예치금 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액 2. 기타민간예치금 회수액
	2. 예치금이자수입	1.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입
4. 공공기금예탁금	1.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2.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5. 기타	1.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원금 회수(*)	
	2. 교부사업비 반환금 및 기타잡수익	
	3. 벌금 및 과료	

(*) 연합뉴스에 대한 기타민간융자금과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의 경우 만기가 2009년에 도래할 예정임. 또한, 연합뉴스에 대한 기타민간융자금의 경우 무이자 융자로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4)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 현황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67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원천별로 구분된 수입항목을 정부세입예산의 목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각 회계연도별 정부세입예산 항목별 운용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발생원천별 수입항목		정부세입예산의 목
1. 법정부담금 및출연금	1. 법정부담금	593 법정부담금
	2. 방송사업자 출연금	593 법정부담금
2. 융자금	1. 융자원금 회수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 융자이자수입	54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3. 금융기관 예치금	1. 예치금 회수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4 기타민간예치금회수	
2. 예치금 이자수입	545 기타재산수입	
4. 공공기금 예탁금	1.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2.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5. 기타	1.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원금 회수	521 정부출자수입
	2. 교부사업비 반환금 및 기 타잡수익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3. 벌금및과료	561 벌금및과료

3. 수입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검토

1) 수입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기본전체 검토

이번 장에서는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① 정확성, ②단순명료성, ③보편성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2)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검토

방송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국회심사과정에서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 언급된 바 있어, 이를 검토하여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기로 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입추계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 타 기금 수입추계 사례 검토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받는 총 62개의 기금(방송발전기금 포함) 중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상의 상세 내역을 검토하여, 방송발전기금과 수입의 발생유형과 성격('59 기타경상이전수입' 금액의 비중이 높으며, '593 법정부담금', '594 민간출연금'의 금액이 많음)이 유사한 기금을 선정할 후, 해당 기금의 수입추계 방법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검토, 해당 기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추계방법을 조사하였다. 유사 유형의 기금으로 선정된 기금은 다음과 같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 유사연구보고서 사례 검토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성격이 유사한 연구보고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추계 관련 연구보고서가 파악되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 통신사업자 부담금의 중장기 기금수입 전망(한국항공대학교, 2007.5)
- 용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추계모델 개발 및 수입계획 전망(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5)

5) 과거 통계자료 분석

각 수입 유형별 수입추계를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상세한 통계자료 분석 내용은 다음 장 각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6) 수입추계 개선 방향

지금까지 파악,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입추계방법을 개선하기로 한다. 수입 항목별로 수정된 상세 추계방법은 다음 장 각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 매출금액의 평균이 아닌 매출금액 성장률의 평균을 이용한다
- 최근 3년간의 평균자료를 이용한다
- 단순평균이 아닌 가중평균 개념을 이용한다
- 경기에 따른 변화가능성도 가능한 고려한다

- 시장조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한다
- 매출액 성장률 이외의 다른 변수(예: 시장점유율, 평균징수율 등)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상기 사항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추정 또는 일부 방법을 수정하여 추정한다

4.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수입추계방법

1) 법정부담금및출연금 개요

(단위: 백만원)

대구분	소구분	회사명	징수율 적용 모수	징수율	징수시기
지상파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KBS, EBS	방송광고매출액	3.17%	매월 기금 징수
	(주)문화방송, (주)SBS	MBC, SBS	방송광고매출액	4.75%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총 29개)	o 지역문화방송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목포, 원주, 여수, 안동, 충주, 포항, 삼척 o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OBS경인방송	방송광고매출액	3.37%	
	라디오방송사업자	경기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라디오인천, YTN라디오	방송광고매출액	2.87%	
	영어FM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방송광고매출액	2.8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 등 119개사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1/1.3/1.8/ 2.3/2.8%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평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사)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2%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사)(경업 5개사 제외)	화성산업(동백TV물), 아이디지털홈쇼핑, 에스케이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홈쇼핑), 케이티하이텔(Paran쇼핑), 티브이버룩시장(TV버룩시장)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0%	
위성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1%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티유미디어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0%	

(주1) KBS, MBC, 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시점까지 유예

(주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관련 매출액 금액에 따라 1% 부터 2.8%까지 누진적으로 적용

(주3)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 결산상 영업이익 *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입계획 대비 실적 비교

과거 3년 동안의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수입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방송사업자별로 수입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실적 심사중)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2,634	143,050	10,416	146,501	171,154	24,653	160,693	161,350	657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132,324	142,594	10,270	146,065	170,045	23,980	160,333	157,378	(2,955)
기타경상이전수입	310	456	146	436	1,109	673	360	3,972	3,612
법정부담금및출연금									
지상파방송사업자	97,650	97,202	(448)	101,807	100,358	(1,449)	92,728	94,097	1,36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8,412	19,174	762	21,710	23,319	1,609	26,269	28,614	2,34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2,095	25,267	13,172	20,278	35,298	15,020	35,616	28,793	(6,823)
위성방송사업자	3,167	-	(3,167)	-	-	-	3,800	3,544	(256)
법정부담금 소계	131,324	141,643	10,319	143,795	158,975	15,180	158,413	155,048	(3,365)
민간출연금	1,000	951	(49)	2,270	11,070	8,800	1,920	2,330	410
법정부담금및출연금 합계	132,324	142,594	10,270	146,065	170,045	23,980	160,333	157,378	(2,955)
계획대비실적비율(차이율)			7.8%			16.4%			-1.8%

자료: 2006, 2007, 2008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기금결산검토보고서

3)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과 조달금액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90일~120일인 어음으로 수령하는 관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사업수입 금액(징수부과액)과 실제 조달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차이 금액은 매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의 미수금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조달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인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등의 금액에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금 손익계산서상의 사업수익과 일치함.
-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에 기초 미수금 및 기말 미수금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금 현금흐름표상의 사업수익으로 인한 유입액과 일치함.

4)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당해연도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입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징수 당해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연도인 징수 직전연도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우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을 추정한 이후 평균 어음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초, 기말 미수금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조달금액을 추정한다.

$$\begin{array}{l}
 \boxed{\text{지상파방송사업자 법}} \\
 \boxed{\text{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boxed{\text{징수 당해연도 방송}} \\
 \boxed{\text{광고매출액}} * \boxed{\text{징수율(2.87~4.75\%)}} \\
 \\
 \boxed{\text{지상파방송사업자 법}} \\
 \boxed{\text{정부담금 조달금액}} = \boxed{\text{지상파방송사업자 법}} \\
 \boxed{\text{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boxed{\text{기초 미수금}} - \boxed{\text{기말 미수금}}
 \end{array}$$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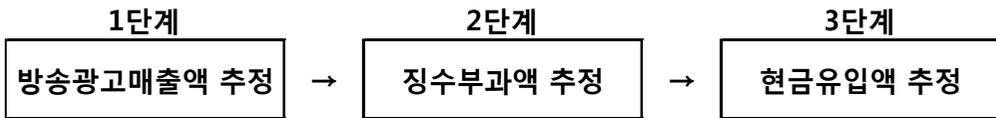
- 2008년 6월~12월 방송광고 매출액 추정시 과거 4년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 -> 방송광고 매출액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경우 이러한 감소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방송광고 매출액의 성장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방송사별 시장점유율을 과거 3년간의 평균 점유율로 추정 -> 단순 평균함으로써 최근연도의 상황을 보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장점유율의 증감을 또는 최근연도 비중을 더 많이 반영하는 가중평균 등의 방법 이용 가능
- 과거 평균치를 산정하는 기간이 2008년 6월~12월 매출액 추정치를 산

정하는 경우에는 4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3년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산업 주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설정 필요

- 방송광고매출액 성장률이 최근의 감소추세를 고려할 경우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감소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반영
- 어음회수기간을 3.5개월로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미수금을 분석하여 보면 다소 다르게 발생하고 있음 -> 2006년말에는 평균 4개월분의 미수금이, 2007년말, 2008년말에는 평균 3.2개월분의 미수금이 계상되어 있음.

(2) 법정부담금 추계방법 개선방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A. (1단계) 방송광고매출액 추정

① 징수 직전연도 1월 ~ 5월 실제 매출액 파악

-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상의 방송광고비 파악 : 총 방송광고비에서 지상파DMB방송광고비, KBS LA TV 방송광고비를 차감

② 징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추정

- 징수 직전연도 1월 ~ 5월 실제 매출액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연 매출액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연 환산비율을 이용 :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 직전연도 5월 누적 매출액 * 연 환산비율
- (대안 2)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이용 :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 연구보고서상의 추정치의 평균
- (대안 3) 상기 대안 1과 대안 2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 : 직전연도

$$\text{연간 매출액} = (\text{대안 1} + \text{대안 2}) / 2$$

* 연 환산비율 : 과거 통계자료(1994년~2008년 15년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경기 상황에 따라 월별 매출액 발생 유형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 이를 이용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5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함.

- 정상적인 경기 상황인 경우 : 1월~5월 매출액 비율 = 약 40% → 연 환산비율 = $1 / 0.4 = 2.50$
- (광고시장위축) 하반기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1월~5월 매출액 비율 = 약 43.5% → 연 환산비율 = $1 / 0.435 = 2.30$
- (광고시장회복) 하반기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1월~5월 매출액 비율 = 약 35.5% → 연 환산비율 $1 / 0.355 = 2.82$

③ 징수 당해연도 연간 매출액 추정

- 징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과 시장성장율을 반영하여 징수 당해연도 연간 매출액 추정.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여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세 분석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임. 향후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세자료 이용 가능
- (대안 1) 시장조사기관의 시장성장율 자료 평균치 이용
- (대안 2)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성장률의 가중평균 이용 → 경제위기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현저히 축소되어 정상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지 않으므로 과거 성장률을 단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대안 3) 인과관계가 높은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율 추정 → 광고시장성장율 추정 → 방송광고시장 성장률 추정’ 가능 → 통계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시장조사기관의 시장성장율 자료 이용

- 제니스옵티미디어 추정 : 대표적인 시장조사 및 예측기관, 2009년 전 세계 TV 광고시장규모 5.5% 하락 예상

- PwC 추정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9~2013' (PwC. 2009) 발표를 통해 2009~2013년 전세계 광고시장 전망. 12개 Industry sector, 48개국 5년 추정치 발표, 한국의 경우 2009년에 (-) 24.1%, 2010년에 (-) 2.3% 추정
- Informa Telecoms & Media 추정 : Global TV Advertising Forecasts(Informa Telecoms & Media, 2009.03) 발표를 통해 2009년 전세계 텔레비전 광고시장 전망.

B. (2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①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정

- 사업자 그룹별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증감율을 가중평균하여 추정

② 평균 징수율 추정

- 평균 징수율 = \sum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 사업자 그룹별 징수율)

③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징수 당해연도 방송광고매출액 * 평균징수율

C. (3단계)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① 직전연도 기초 미수금 파악

- 결산상 실제 미수금

② 평균 회수기간 추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90일~105일인 어음으로 수령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정책적 회수기간 반영 (예: 105일, 90일 등)
- (대안 2) 과거 회수기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간 방송광고매출액 중 4분기 매출액을 추정하여 여기에 평균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미수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경기 상황에

따라 4분기 매출액 비율이 변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대비 미수금 비율을 가중평균하기로 한다.

③ 직전연도 기말 미수금 추정

- 직전연도 기말 미수금 = 직전연도 방송광고매출액(E)*회수기간/365

④ 해당연도 기말 미수금 추정

- 당해연도 기말 미수금 = 당해연도 방송광고매출액(E)*회수기간/365

⑤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기초 미수금 - 기말 미수금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직전연도(수입계획 수립연도)의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계획 수립시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 부담금	=	징수 직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징수율(1.0~2.8%)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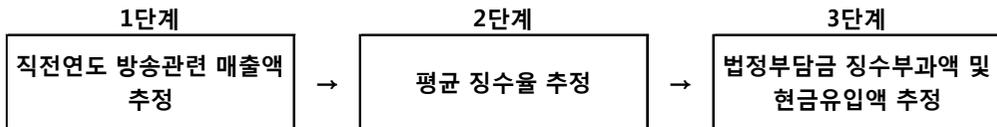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방송 관련 매출액 성장률을 단순하게 10%로 추정. 2004년에는 경상 GDP성장률인 9%로 추정, 2006년 및 2009년에는 10%로 추정 ->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임. 매출액 성장을 추세를 이용하거나 시장연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매출액 성장에 따른 징수액 인상율을 3%로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징수액 인상율이 실제 인상율보다 다소 낮아보임. 추가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인상율 반영 필요
- 징수율 적용 방법에는 2009년 기금운용계획에서의 방법처럼 직전연도 징수율에 매출액 상승에 따른 징수율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법과 과거연도 징수율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매출액 성장에 따른 징수액 인상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징수율 증감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고려

(2)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A. (1단계)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①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 ②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 성장률을 이용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 가중평균성장율)
 - (대안 2) 시장성장율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이용

* 가중평균 성장률 : 방송관련 매출액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개년간의 방송관련 매출액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B. (2단계) 평균 징수율 추정

- ① 과거 징수율 산정 : 징수율 = 징수액 /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② 가중평균징수율 추정
 - 징수율의 증감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율 증감을 가중평균하여 평균 징수율 추정
 -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과 일관성 유지

C. (3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 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추정 평균징수율
- ②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과거 추세상 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수부과액과 동일하다고 봄)

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직전연도(수입계획 수립연도)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계획 수립시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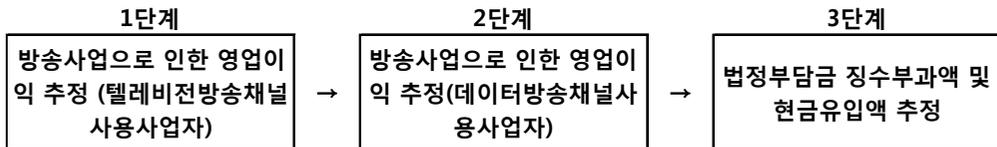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 부담금	=	징수 직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	징수율(10%/12%)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단순하게 2%로 추정. 과거 실제 결산상 영업이익의 성장률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 영업이익 성장률 추세를 이용하거나 시장연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2009년 새로 추가된 데이터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추가 반영 필요

(2)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A. (1단계/2단계)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추정

- ①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 파악
- ②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 영업이익 성장율을 이용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1 + 가중평균 성장율)

- (대안 2) 시장성장율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이용
 - * 가중평균 성장율 : 방송관련 영업이익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개년간의 방송관련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다만,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송사업으로 인해서는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부담금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B. (3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징수율(12%/10%)

②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과거 추세상 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수부과액과 동일하다고 봄)

7)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직전연도(수입계획 수립연도)의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계획 수립시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	징수 직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징수율(1% / 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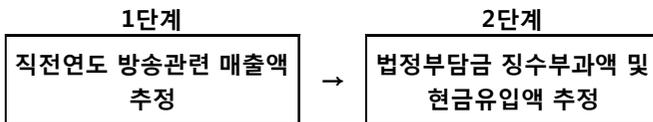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방송 관련 매출액 성장률을 단순하게 3.5%로 추정 ->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임. 매출액 성장을 추세를 이용하거나 시장연구 보고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2)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A. (1단계)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①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②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 성장률을 이용 :

$$\text{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text{징수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 \text{가중평균성장률})$$
- (대안 2) 시장성장률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이용
 * 가중평균 성장률 : 방송관련 매출액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개년간의 방송관련 매출액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B. (2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②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과거 추세상 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수부과액과 동일하다고 봄)

5. 용자원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용자사업 개요

방송발전기금은 용자사업으로 프로그램제작비용자지원과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민간기관에 대한 용자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분	프로그램제작비용자	디지털방송전환용자
목적	방송콘텐츠 제작, 공급 활성화 및 방송영상분야의 경쟁력 제고	디지털방송전환 촉진 및 디지털방송산업 발전 도모
지원대상	PP, 독립제작사	지역지상파방송사, SO, PP
지원한도	1사당 5억원 이내	지역지상파방송사 및 SO : 20억원 이내 PP : 10억원 이내
개시시점	2005년	2003년
용자금리	연 3.5%(용자취급은행 수수료 1.0% 포함)	전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대출금리 - 0.5%P
상환기간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매칭비율	직접제작비의 90% 범위 내	용자 90%, 자체조달 10%

2) 용자원금 회수액 추계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용자원금 회수액은 용자 종류별(프로그램제작비용자, 디지털방송전환용자,

기타민간용자)로 만기회수액과 조기상환액을 추정하여 산정된다.

$$\begin{aligned}
 & \boxed{\text{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프로그램제작비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디지털방송전환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기타민간용자원금 회수액}} \\
 & \boxed{\text{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만기회수액}} + \boxed{\text{조기상환액}}
 \end{aligned}$$

용자원금 회수액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조기상환비율을 단순하게 5%로 추정하고 있음. 과거 실제 조기상환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2) 용자원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용자원금 회수액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A. (1단계) 용자금의 만기구조 파악

①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의 만기구조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의 만기구조 파악

② 직전연도 용자금 지출계획의 만기구조 파악

- 직전연도 용자금 지출계획에 대한 만기구조 파악
- 프로그램제작비용자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디지털방송전환용자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과거 추세를 감안하여 4분기 용자지원, 분기별 상환을 가정

B. (2단계) 직전연도 조기상환액 추정 및 만기구조 파악

① 평균 조기회수율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조기회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조기회수율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조기회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조기회수율 산정
- (대안 2) 조기회수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평균조기회수율 산정

②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추정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 * 평균 조기회수율

③ 직전연도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 조기회수액은 그 이후 각 연도별로 만기 회수될 금액이 조기 회수된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용자금의 각 연도별 회수예상액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상기 < 표 48 > 용자종류별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의 만기구조 금액 비율 참조)
- (대안 2) 조기회수 건별로 조기회수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 조기회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C. (3단계) 만기회수액 추정

① 대상연도 만기회수액 추정

-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 중 대상연도 회수예상액
- (+) 직전연도 용자금 지출계획 금액 중 대상연도 회수예상액
-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중 대상연도 만기회수예상분이 조기회수된 금액

D. (4단계) 조기회수액 추정

① 대상연도 기초 용자금 추정

-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
- (+) 직전연도 용자금 지출계획
- (-) 직전연도 만기회수액
-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② 대상연도 조기회수액 추정 : 대상연도 기초 용자금 * 평균 조기회수율

3) 용자금 이자수입 추계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용자금 이자수입 추정은 용자종류별로 용자금 평균잔액을 추정한 후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이자수입	=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평균잔액	+	대출고정금리(2.5%)
디지털방송전환용자금 이자수입	=	디지털방송전환용자금 평균잔액	+	추정금리(3.3%)

용자금 이자수입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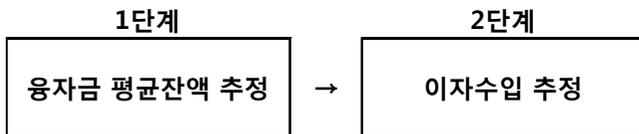
- 이자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용자금 평균잔액은 대상기간동안의 평균잔액을 이용하여야 하나, 과거 3년 및 5년 동안의 평잔을 이용하고 있음
- 용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용자금 평잔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이유로 대상기간 동안의 신규용자 및 회수 실적이 고려되지 않음
- 조기회수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수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용자의 대부분이 4사분기에 발생하고 있으나, 용자시기, 회수시기가 이자수입 추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2) 용자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용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A. (1단계) 용자금 평균잔액 추정

- ① 용자계획, 회수계획(만기, 조기)이 반영된 용자금 증감현황 추정
 - 용자금 회수액 추정 단계에서 산정한 용자금 증감현황 이용
- ② 용자금 평균잔액 추정
 -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대부분의 용자가 4사분기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용자금 평잔 산정, 조기회수는 연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
 - 용자금 평잔 = 기초 용자금 + 당기 용자지원액/4 - 만기회수액/4 - 조기회수액/2
 - (대안 2) 용자, 회수 시점에 상관없이 기초, 기말 단순 평균
 - 용자금 평잔 = (기초 용자금 - 기말 용자금)/2

B. (2단계) 용자금 이자수입 추정

- ① 용자금 종류별 적용이자율 검토
 - 프로그램제작비용자 : 대출금리 3.5% 고정, 대하금리 2.5%
 - 디지털방송전환용자 : 전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대출금리 - 0.5%

- ②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검토
 -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대출금리 추이 분석
 - 취급은행수수료, 기술보증수수료 등
- ③ 수입이자율 추정
- ④ 이자수입 추정 : 이자수입 = 용자금 평잔 * 수입이자율

6.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은 용자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한다.

- 만기, 이자율이 거의 확정적이므로 개별 건별로 추정. 다만, 공공기금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조기회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공공기금의 예탁시점이 대부분 4사분기이므로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정시 고려.

7.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방송발전기금 금융자산 규모는 2008년말 현재 254,280백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의 105.1%에 해당되고 있으며, 수입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실적 등으로 인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여유자금을 제1금융권(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증권사, 투신사 등)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확정 금리형 상품의 운용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과에서 제안서 등을 접수 및 검토하여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펀드, 채권 등 수익증권)의 운용은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1) 예치금 회수액 추계

방송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액과 기타민간예치금 회수액의 경우 수입계획과 실제 수입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운용계획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2) 예치금 이자수입 추계

(1)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은 여유자금의 평균잔액을 추정된 후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예치금 이자수입	=	여유자금 평균잔액	*	수입이자율(5.31%)
-----------------	---	------------------	---	---------------------

예치금 이자수입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실제 투자자산의 장단기 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 산정시의 장단기 투자비율이 다소 상이함
 - 실제(2008년 기준) : 총자산의 34%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나머지 자산의 78.6%를 1년 미만 자산에, 21.4%를 1년 이상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 기준수익률은 전체 여유자산을 대상으로 10%는 단기, 90%는 장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 예치금 평균잔액 산정시에 다음과 같은 평균잔액 산정 공식에 의해 이자수익이 과소계상되고 있음
 - 예치금 평잔 = (2008년말 여유자금 전망치 + 2009년말 여유자금 전망치) / 2 * 50%

(2) 예치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직전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1. 직전연도초 예치금 잔액 및 만기구조 파악
2. 직전연도 동안 예상되는 수입계획 집계 (예치금 이자수입 포함)
3. 직전연도 동안 예상되는 지출계획 집계 (여유자금운용 제외)
4. 직전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2단계 : 대상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1. 대상연도초 예치금 잔액 추정
2. 대상연도 동안 예상되는 수입계획 집계
3. 대상연도 동안 예상되는 지출계획 집계 (여유자금운용 제외)
4. 대상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3단계 : 장단기예치금 평균잔액 추정

1. 각 연도말 예치금 금액을 확정금리형(단기), 확정금리형(장기), 실적배당형 예치금으로 구분 :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상의 목표자산배분안에 따라 배분
2. 장단기 예치금 평균잔액 추정 : (기초예치금 + 기말예치금) / 2

4단계 :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1. 예치금 종류별 장단기 수익률 추정 :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상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추정
2.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 $\sum (\text{예치금 종류별 예치금 평잔} * \text{수익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제출

방송발전기금을 비롯한 모든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크게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용총칙은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되어,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경우에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수입계획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운용계획안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사업자의 수익 증대 등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수입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과 실적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본 연구의 필요성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6조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고 있던 공익자금이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 자산운용수입 획득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방송콘텐츠활성화사업, 시청자복지증진사업 등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연도에는 방송사업자의 수익 증대로 인한 법정부담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계획 대비 수입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1 >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금운용계획	220,050	216,930	239,426
수입 실적	232,099	254,414	241,851
증 감	12,049	37,484	2,425
집행율(%)	105.5	117.3	101.1

자료: 200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검토보고서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예측하지 못한 방송시장 및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 기금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의 정확한 예측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처럼 주요 수입항목별로 계획에 비해 실적에 과도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나 기금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입실적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계방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

기 위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수입실적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수입추계 기법을 통하여 수입계획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여유자금 보유 및 기금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금사업비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범위

(1) 타 기금에서의 수입추계 방법 조사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모든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타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추계기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기금별로 수입 유형 및 발생성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의 수입 유형과 유사한 기금을 먼저 선정한 후, 각 기금의 수입추계기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재원을 유형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분석해 보면 크게 ① 방송사업자로부터의 법정부담금, ② 자산운용에 따른 재산수입(이자수입), ③ 예치금 및 용자원금 회수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치금 및 용자원금 회수액은 정부 정책 및 기금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기계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하나, 나머지 수입항목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수납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과 2007년을 기준으로 수입 유형별로 운용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해 보면,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용자원금 회수액 등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 표 2 > 수입 유형별 계획 대비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관/항/목	2007년			2008년(실적 심사중)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11) 재산수입	7,040	15,640	8,600	7,453	12,087	4,634
(52) 정부출자수입	-	-	-	-	-	-
정부 출자수입	-	-	-	-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040	15,640	8,600	7,453	12,087	4,634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411	929	(482)	1,538	1,244	(294)
기타재산수입	5,629	14,711	9,082	5,915	10,843	4,928
(12) 경상이전수입	146,501	171,154	24,653	160,693	161,350	657
(56) 벌금및몰수금	-	-	-	-	-	-
벌금및몰수금	-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46,501	171,154	24,653	160,693	161,350	657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146,065	170,045	23,980	160,333	157,378	(2,955)
기타경상이전수입	436	1,109	673	360	3,972	3,612
(20)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000	13,186	4,186	11,639	8,716	(2,923)
(75) 용자원금회수	9,000	13,186	4,186	11,639	8,716	(2,923)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	8,200	12,386	4,186	10,839	7,916	(2,923)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800	800	-	800	800	-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52,389	52,389	-	47,578	47,578	-
(85) 정부예금회수	52,389	52,389	-	47,578	47,578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6,349	46,349	-	29,804	29,804	-
기타민간예치금회수	6,040	6,040	-	17,774	17,774	-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000	2,045	45	12,063	12,120	57
(92) 예탁금원금회수	-	-	-	10,000	10,000	-
예탁원금 회수	-	-	-	10,000	10,000	-
(95) 예탁이자수입	2,000	2,045	45	2,063	2,120	57
공공기금예탁기금이자수입	2,000	2,045	45	2,063	2,120	57
계획대비실적비율(차이율)			17.3%			1.0%
	216,930	254,414	37,484	239,426	241,851	2,425

자료: 2007, 200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검토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운용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용자원금 회수액 등에 보다 집중하여 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한다.

(3)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도출

방송발전기금의 2008년도 여유자금의 운용규모는 계획 대비 53.3% 증가한 94,333백만원으로 기금의 총 운용규모에서 여유자금 운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9.0%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8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여유자금만을 감안한 것이며,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 규모는 총 254,280백만원으로 기금

규모에 비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방송발전에 재투자하여 방송발전 및 시청자의 방송복지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할 사업성 기금으로서,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 방송시장 개방 등의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예산 및 계획 수립을 통하여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 기금 수입규모 산출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향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이 통합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중장기 기금 수입규모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의 경우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된 후, 2008년 12월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되고 있으나, 통과여부 및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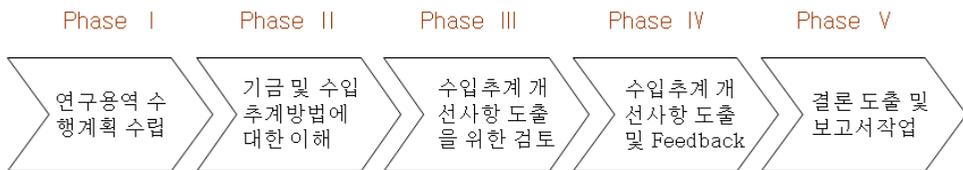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인 관계로, 본 용역에서는 해당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2. 연구의 추진방법

1)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에서는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수행 체계 하에 수행되었다.

< 그림 1 > 연구수행체계



2) 단계별 수행내용

(1) 연구용역 수행계획 수립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범위, 투입인원, 수행일정, 일정별 수행내용 등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자와 접촉하여 연구의 성격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다.

(2) 기금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한 이해

과거 자료 분석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수입항목 및 항목별 추계방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 방송발전기금 및 주요 수입항목에 대한 이해
- 기획재정부에서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실적 비교 분석
- 주요 항목별 수입추계방법에 대한 이해 : 과거연도 수입추계 방식 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 수입추계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이해

(3)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다음과 같은 검토절차를 수행한다.

- 타기금 수입추계 사례 분석 : 전체 62개 기금 중 방송발전기금의 수입 유형 및 성격과 유사한 기금을 선정하여, 해당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추계방법 사례를 분석한다.
- 유사 연구보고서 분석 : 기금운용계획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와 유사한 연구보고서 사례를 탐색하여 분석한다. 또한, 수입추계 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인 시장규모 추정방법, 이자율 적용방법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사례를 탐색하여 분석한다.
- 기금운용계획/결산 심사보고서 분석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의 국회 보고자료인 매 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검토보고서 및 기금결산 심사/검토보고서를 분석한다.
- 수입원천별 과거 통계자료 분석 : 수입추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입원천별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인터뷰

(4)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 및 Feedback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한다.

- 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도출
- 재산수입(이자수입) 추계 개선방안 도출
- 예치금 및 용자원금 회수액 추계 개선방안 도출
- 발주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의 Feedback 반영

(5) 결론 도출 및 보고서작성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Ⅱ. 방송발전기금 및 수입 현황 분석

1. 방송발전기금 일반 현황

1) 기금의 설립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6조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고 있던 공익자금이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0. 1. 12 방송법(법률 제6139호) 공포
- 2000. 3. 13 방송발전기금사업 시작(舊 방송위원회 출범)
-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로 이관, 운용

2) 기금의 조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재산수입(이자수입) 등의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통하여 각 방송사업자별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에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

방송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89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125 ‘신규 영어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 ①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
- ② (주)문화방송과 (주)SBS :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 단, (주)문화방송과 (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
- ③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 적용대상사업자 : 부산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마산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청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강릉문화방송(주), 진주문화방송(주), 목포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여수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삼척문화방송(주),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OBS경인방송
- ④ 라디오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 적용대상사업자 : (주)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

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주)라디오인천, YTN라디오

⑤ 영어 FM 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 적용대상사업자 : 수도권 및 광주권 영어 FM. 단, 추가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는 기타 지역의 영어 FM 방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

방송법 제37조 제3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사업으로 인한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9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 ① 방송관련 매출액이 25억원 이하인 사업자 : 방송관련 매출액의 1%
- ② 방송관련 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사업자 : 25백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3%
- ③ 방송관련 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사업자 : 57.5백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8%
- ④ 방송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사업자 : 147.5백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 ⑤ 방송관련 매출액이 200억원 초과하는 사업자 : 377.5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8%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

방송법 제37조 제4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의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수율'에 의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기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9에 의하여 그 이전 고시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새로이 고시하였다.

-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 :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
- 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

(4)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

방송법 제37조 제3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사업으로 인한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8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의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 ① 일반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1%
- 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0%

3) 기금의 운용

방송발전기금의 운용금액은 방송콘텐츠활성화사업, 시청자복지증진사업, 방송기반강화사업, 방송교류협력활성화사업 등 기금사업에 집행되는 금액과 기금관리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방송정책행정지원에 집행되는 금액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방송법 제3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용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舊 방송위원회)는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 체계 변경에 따라 방송정책과 재정지원의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운용되어 온 “항-세항” 체계를 2007년부터 ①방송콘텐츠활성화, ②시청자복지증진, ③방송기반강화, ④방송교류협력 활성화 등 4개의 프로그램(정책 및 단위사업)으로 예산분류 체계를 재정비한 바 있다.

4개의 프로그램으로 예산분류체계가 재정비된 이후인 2007년 및 2008년의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실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표 3 > 방송발전기금 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1. 방송정책행정지원	29,689	16,782
기금관리비	29,689	8,07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8,712
2. 기금사업비	139,566	130,736
①방송콘텐츠활성화	70,981	77,357
방송콘텐츠활성화(용자)	1,998	478
②시청자복지증진	31,121	24,710
③방송기반강화	16,170	7,943
방송기반구축(용자)	11,974	14,000
④방송교류협력활성화	6,314	5,450
⑤기관단체운용지원	1,008	798
3. 여유자금운용	85,159	94,333
합 계	254,414	241,851

2. 방송발전기금 자산의 구성 분석

일반적으로 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수입은 해당 법인의 주된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다.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의 경우에도 그 발생원천에 따라 크게 방송발전기금의 주된 활동인 법정부담금 징수로 인한 수입과 방송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방송사업자로부터 법정부담금, 출연금 징수액
2. 보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용자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 등의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3. 보유 자산 회수액 : 용자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 등 회수액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을 적절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입이 발생하는 유형과 성격을 분석하여 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수입별로 그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결산 대차대조표에 근거한 자산 분석

방송발전기금의 각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자산 구성을 분석하면, 2008년말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장단기대여금 40,555백만원, 만기보유증권 30,000백만원, 장단기금융상품 121,600백만원, 매도가능증권 148,446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4 > 각 회계연도별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계정명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내역
유동자산	200,077	254,644	285,309	
현금및현금등가물	128	1,428	97	국고,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	94,200	87,200	90,600	1년 미만 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57,792	124,736	133,255	수익증권
만기보유증권	-	-	30,000	공자기금 유동성 대체
미수금	33,727	28,758	20,484	지상파방송 부담금 미수금 등
단기대여금	7,780	7,943	8,901	디지털전환용자금 등
미수수익	6,450	4,579	1,972	금융자산 미수이자
비유동자산	130,812	105,104	109,960	
장기금융상품	26,700	-	31,000	1년 이상 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14,234	10,000	15,191	콘텐츠투자조합출자 등
만기보유증권	40,000	40,000	-	공자기금 유동성 대체
장기대여금	26,227	26,849	31,654	디지털전환용자금 등
유형자산	23,651	28,255	30,222	미디어센터
무형자산	-	-	1,036	소프트웨어
장기미수수익	-	-	671	금융자산 미수이자
보증금	-	-	186	콘도회원권
운용자산	-	-	-	
투자외기타자산	-	-	-	
자산합계	330,889	359,748	395,269	
유동부채	92	27	97	
비유동부채	-	-	-	
부채합계	92	27	97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773	4,916	5,766	
이익잉여금	326,024	354,805	389,406	
자본합계	330,797	359,721	395,172	
부채와자본총계	330,889	359,748	395,269	

자료: 2006, 2007, 200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검토보고서

방송발전기금의 대차대조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자산별로 그 구성내역을 상세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장단기대여금

대차대조표상의 장단기대여금 금액은 프로그램제작비용자원금, 디지털방송전환용자원금 및 기타민간용자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5 > 장단기대여금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단기대여금	7,780	7,943	8,901
장기대여금	26,227	26,849	31,654
장단기대여금 합계	34,007	34,792	40,555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3,559	3,024	1,738
디지털방송전환용자금	28,048	30,168	38,017
기타민간용자금	2,400	1,600	800
용자원금 합계	34,007	34,792	40,555
차 액	-	-	-

(2) 만기보유증권

대차대조표상의 만기보유증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6 > 만기보유증권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만기보유증권(유동)	-	-	30,000
만기보유증권(비유동)	40,000	40,000	-
만기보유증권 합계	40,000	40,000	3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40,000	40,000	3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40,000	40,000	30,000
차 액	-	-	-

(3) 매도가능증권, 장단기금융상품

대차대조표상 매도가능증권, 장단기금융상품은 통화금융기관예치금, 기타민간예치금 및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장단기금융상품은 결산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예치금 명세에는 취득원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공정가액 평가차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표 7 > 매도가능증권, 장단기금융상품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매도가능증권(유동)	57,792	124,736	133,255
매도가능증권(비유동)	14,234	10,000	15,191
단기금융상품	94,200	87,200	90,600
장기금융상품	26,700	-	31,000
합 계	192,926	221,936	270,046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773)	(4,916)	(5,766)
순 액	188,153	217,020	264,28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78,153	87,200	121,600
기타민간예치금		119,820	132,680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10,000	10,000	10,000
예치금 등 합계	188,153	217,020	264,280
차 액	-	-	-

자료: 방송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방송발전기금 기금결산검토보고서, 기금 제공 예치금 명세

(4) 미수금

대차대조표상의 미수금은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미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정부담금 징수를 만기가 90일 ~ 105일인 어음으로 수령하는 관계로 매 회계연도말 약 3개월 ~ 3.5개월분의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 표 8 > 미수금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미수금	33,727	28,758	20,484
미수금 합계	33,727	28,758	20,484
지상파방송사업자 미수금	33,714	28,008	20,19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미수금	13	-	-
민간출연금 미수금	-	750	270
임차보증금 미수금	-	-	17
미수금 합계	33,727	28,758	20,484
차 액	-	-	-

자료: 방송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방송발전기금 기금결산검토보고서, 기금 제공 미수금 명세

2) 유형별 자산의 구성

방송발전기금의 매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와 주요 자산의 구성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방송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6종류의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된 자산 종류별로 발생하는 수입을 파악하여 그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용자원금 :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디지털방송전환용자금, 기타민간용자금
2. 금융기관예치금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기타민간예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4.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금(*)
5. 미수금 : 법정부담금미수금, 민간출연금 미수금 등
6. 기타자산 :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미수수익, 보증금 등

(*)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의 경우 2009년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 이후 시점에는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에서 제외함.

3. 발생원천별 수입의 구성 분석

방송발전기금 자산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바를 통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을 발생원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종류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9 > 발생원천별 수입의 구성

발생원천	수입 유형	세부 수입항목
1.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1. 법정부담금	1.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2. 방송사업자 출연금	4.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2. 용자금	1. 용자원금 회수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원금 회수
		2. 디지털방송전환용자원금 회수
		3.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2. 용자이자수입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 이자수입
		2.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이자수입
		3. 기타민간용자 이자수입(*)
3. 금융기관예치금	1. 예치금 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액
		2. 기타민간예치금 회수액
	2. 예치금이자수입	1.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입
4. 공공기금예탁금	1.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2.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5. 기타	1.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원금 회수(*)	
	2. 교부사업비 반환금 및 기타잡수익	
	3. 벌금 및 과료	

(*) 연합뉴스에 대한 기타민간용자금과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의 경우 만기가 2009년에 도래할 예정임. 또한, 연합뉴스에 대한 기타민간용자금의 경우 무이자 용자로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상기 그룹별로 수입의 발생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각 그룹별로 수입추계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

4.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 현황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67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입예산의 관·항·목 항목 중 방송발전기금의 수입과 관련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 10 > 방송발전기금의 수입과 관련 있는 관·항·목

관	항	목	내역
11 재산수입	52 정부출자수입	521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545 기타재산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 ² 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상이전수입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561 벌금및과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법정부담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연체료 및 반환금 등(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20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용자원금회수	752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 754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용자원금 회수액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용자원금회수액(해외로부터의 용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정부예금회수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4 기타민간예치금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원금회수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자료: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발생원천별로 구분된 수입항목을 정부세입예산의 목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각 회계연도별 정부세입예산 항목별 운용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표 11 > 발생원천별 수입항목과 정부세입예산의 목과 비교

발생원천별 수입항목		정부세입예산의 목
1. 법정부담 금및출연금	1. 법정부담금	593 법정부담금
	2. 방송사업자 출연금	593 법정부담금
2. 용자금	1. 용자원금 회수	752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 754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2. 용자이자수입	54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3. 금융기관 예치금	1. 예치금 회수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4 기타민간예치금회수
	2. 예치금 이자수입	545 기타재산수입
4. 공공기금 예탁금	1.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2.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5. 기타	1.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출자원금 회수	521 정부출자수입
	2. 교부사업비 반환금 및 기 타잡수익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3. 벌금및과료	561 벌금및과료

< 표 12 >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관/항/목	2007년			2008년(실적 심사중)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계획	계획
(11) 재산수입	7,040	15,640	8,600	7,453	12,087	4,634	18,224	7,970
(52) 정부출자수입	-	-	-	-	-	-	10,000	-
정부 출자수입	-	-	-	-	-	-	10,000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040	15,640	8,600	7,453	12,087	4,634	8,224	7,970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411	929	(482)	1,538	1,244	(294)	1,517	2,267
기타재산수입	5,629	14,711	9,082	5,915	10,843	4,928	6,707	5,703
(12) 경상이전수입	146,501	171,154	24,653	160,693	161,350	657	162,191	147,778
(56) 벌금, 물수금및과태료	-	-	-	-	-	-	-	-
벌금및과료	-	-	-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46,501	171,154	24,653	160,693	161,350	657	162,191	147,778
법정부담금	146,065	170,045	23,980	160,333	157,378	- 2,955	161,524	145,932
기타경상이전수입	436	1,109	673	360	3,972	3,612	667	1,846
(20)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000	13,186	4,186	11,639	8,716	- 2,923	10,688	14,318
(75) 용자원금회수	9,000	13,186	4,186	11,639	8,716	- 2,923	10,688	14,318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	8,200	12,386	4,186	10,839	7,916	- 2,923	9,888	14,318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800	800	-	800	800	-	800	-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52,389	52,389	-	47,578	47,578	-	68,388	92,800
(85) 정부예금회수	52,389	52,389	-	47,578	47,578	-	68,388	92,8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6,349	46,349	-	29,804	29,804	-	18,150	39,000
기타민간예치금회수	6,040	6,040	-	17,774	17,774	-	50,238	53,800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000	2,045	45	2,063	2,120	57	31,800	3,300
(92) 예탁금원금회수	-	-	-	10,000	10,000	-	30,000	-
기금예탁원금 회수	-	-	-	10,000	10,000	-	30,000	-
(95) 예탁이자수입	2,000	2,045	45	2,063	2,120	57	1,800	3,300
기금예탁이자수입	2,000	2,045	45	2,063	2,120	57	1,800	3,300
	216,930	254,414	37,484	239,426	241,851	2,425	291,291	266,166
계획대비실적비율(차이율)			17.3%			1.0%		

자료: 2007, 2008, 2009, 2010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기금결산검토보고서

Ⅲ. 수입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검토

1. 수입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기본전제 검토

이번 장에서는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방법은 아래와 같은 기본전제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①정확성, ②단순명료성, ③보편성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보다 정확한 수입추계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방송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국회보고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수입추계의 정확성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적절한 수준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 기금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의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한데, 주요 수입항목별로 계획에 비해 실적에 과도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나 기금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입실적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입추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입추계방법이 단순명료하여 기금관리주체의 담당자가 이를 이용하여 쉽게 추계할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쉽

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기금관리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담당자는 매년 수입계획 등을 추계하여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여 적용이 어려운 수입추계방법이나,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입추계방법 보다는 단순명료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담당자가 매년 적용하기 쉬운 추계방법이 좋은 추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기본전제를 삼아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수입추계방법이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은 수입추계를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여러 곳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에서 하나의 방안을 이용하여 수입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추계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계방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은 그 안정성과 정확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추계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기본전제 사항을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과거연도의 실적자료를 단순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 예) 과거 수입 금액의 단순평균, 가중평균, 과거 성장률의 단순평균, 가중평균 등
-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 변수를 이용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계량모형분석방법) : 예) 구조방정식모형, ARIMA 모형, VAR 모형 등
- 공신력 있는 국내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 예) 한국방송광고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LG 경제연구원 등의 시장전망자료

-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 예) 제니스 옵티미디어, PwC, Informa Telecoms & Media 등의 시장조사기관의 시장전망자료
- 해당 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

2.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검토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경우에도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으며,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국회심사과정에서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 언급된 바 있어, 이를 검토하여 수입추계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기로 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수입추계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수입추계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추정하면서 2008년 1월~5월 실제 광고매출액에 '04년~'07년의 6월~12월 광고매출액 평균치를 합산하였는데, 매년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거 4년간의 6월~12월 광고매출액의 단순 평균치를 합산

하는 것은 정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Page 203)

=> (시사점) 향후 매출액 추정에 과거 광고매출금액의 단순 평균치를 이용하면 광고매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매출액이 상승추세에 있거나 하락추세에 있는 경우 과거 광고매출액의 단순 평균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기간의 단순 평균치로만 나타나게 된다. 개선방안으로 광고매출액 성장률의 평균치를 반영하는 방법, 주요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성장률을 0.5%로 추정하였는데, 최근의 방송광고 매출액 실적의 증감추이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그럼에도 매출액 성장률을 0.5%로 예측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 생각됨(Page 204~205)

=> (시사점) 최근의 방송광고 매출액 실적의 증감 추이 분석을 통하여 매출액 성장률 추정 시에 매출액 추세 및 최근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수입추계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추정근거를 살펴보면, 방송광고시장 규모 추정은 2007년 방송광고 매출액 추정치에 방송광고 성장률 추정치(1% 성장)를 적용하여 2조 3,886억원으로 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2007년 연구보고서에서 추정된 평균광고시장규모 예측에 따른 금액 2조 4,753억원보다는 867억원 적은 것임. 과소 추정금액 867억원에 평균징수율 3.94%(2006년 기준)를 적용할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측치보다 약 34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과소 추

정된 것으로 보임(Page 209~210)

=> (시사점) 공신력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는 방안 고려. 단, 이를 수입추계기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구보고서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성되어야 한다.

(3)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2003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법정부담금 수입실적이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금 수입 중 법정부담금 수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Page 238)
 - 향후 방송광고시장의 추이 및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법정부담금 요율을 사업간 공공성, 수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age 238)
- => (시사점) 방송광고시장의 추이,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예측 등이 수입추계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

(4) 2007년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07년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수입추계와 관련하여 ‘I. 1. 가. 기금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Page 218~221)’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예측하지 못한 방송시장(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 증가 등) 및 금융환경의 변화(금리인상 및 주가상승 등)로 인해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임.
-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 기금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의 정확한 예측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처럼 주요 수입항목별로 계획에 비해 실적에 과도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나 기금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를 감안하여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입실적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계기법의 개발 또는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음.

=> (시사점)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계기법의 개발 또는 보완 요구

3. 타 기금 수입추계 사례 검토

본 장에서는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기본전제 중의 하나인 보편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과 유사한 타 기금의 수입추계방법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방송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62개 기금(정부기금 39개, 민간기금 23개)이 국가재정법에 의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모두 매년 수입계획 등을 추계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에 의해 검토, 수정된 후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검토되어진다.

상기 62개 기금(방송발전기금 포함) 중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수입 내역과 발생유형 및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선정한 후, 해당 기금의 수입추계 방법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검토, 해당 기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추계방법을 조사하였다.

1) 방송발전기금과 수입 내역이 유사한 기금 선정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일 현재 총 62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수입규모 및 항목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표 13 > 각 기금별 수입규모

(단위: 억원)

구분	기금명	소관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합계	
	총합계		1,100,102	1,114,800	983,197	997,710	4,195,809	
사회보장성기금	1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46,215	2,338	-	52,120	100,673	
	2 공무원연금기금	행정안전부	84,399	21,792	387	22,887	129,465	
	3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가족부	398,223	206	-	425,228	823,657	
	4 노인연금기금	국방부	3,594	16,533	-	1,754	21,881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과학기술부	29,579	7,433	-	45,135	82,147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노동부	52,378	200	-	27,278	79,856	
	7 과학기술진흥기금	교육과학기술부	1,026	485	-	1,041	2,552	
	8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5,857	47	-	994	6,898	
	9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가족부	15,972	-	-	2,282	18,254	
	10 국민주택기금	국토해양부	97,811	34,577	100,000	7,432	239,820	
	11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645	490	-	3,724	8,859	
	12 국제교류기금	외교통상부	625	-	-	200	825	
	13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4,389	348	-	2,162	6,899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노동부	920	626	-	1,856	3,402	
사업성기금	15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839	-	-	56	895	
	1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1,919	-	-	50	1,969	
	17 남부협력기금	통일부	456	9,080	-	5,550	15,086	
	1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수산식품부	19,019	-	-	3,161	22,180	
	19 농작물재해보험기금	농림수산식품부	91	200	-	676	967	
	20 농지관리기금	농림수산식품부	10,166	400	-	2,616	13,182	
	21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1,035	1,730	-	4,024	6,789	
	22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369	218	-	3,387	3,974	
	2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식경제부	1,582	-	-	-	1,582	
	24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911	318	-	684	2,913	
	25 보존기금	국가보훈처	1,764	177	-	2,211	4,152	
	26 사학진흥기금	교육과학기술부	1,406	1,076	-	193	2,675	
	27 수산발전기금	농림수산식품부	5,001	200	-	488	5,689	
	2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110	53	-	129	292	
	2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농림수산식품부	287	4,531	-	280	5,098	
	30 여성발전기금	여성부	31	54	-	92	177	
	31 영산강성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671	-	-	42	713	
	32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93	-	-	2,187	2,680	
	3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교육과학기술부	1,781	-	-	148	1,929	
	34 용급의료기금	보건복지가족부	31	358	-	20	409	
	35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부	2,175	319	-	2,763	5,257	
	3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수산식품부	250	5,300	-	430	5,980	
	3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노동부	2,069	290	-	1,485	3,844	
	38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식경제부	13,524	104	-	2,960	16,588	
	39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식경제부	7,462	1,069	-	3,909	12,431	
	4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청	38,850	2,054	32,910	292	74,106	
	41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0	50	-	354	424	
	42 청소년육성기금	보건복지가족부	280	71	-	1,319	1,670	
	43 축산발전기금	농림수산식품부	6,070	-	-	3,603	9,673	
	4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식경제부	43	-	-	54	97	
	45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4,072	-	-	802	4,874	
	계정성기금	46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47,860	530,056	733,900	2,587	1,314,403
		47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148	110,214	-	-	110,362
		48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23,353	43	-	3,999	27,395
		49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수산식품부	3	7,777	-	72	7,852
		50 외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32,761	330,000	66,000	261,704	690,465
		51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10,216	1,000	-	6,930	18,146
		5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4,793	8,095	-	7,024	19,912
53 농어가육둔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541	650	-	353	1,544	
54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위원회	27,524	-	-	11,404	38,928	
5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276	800	-	1,394	2,470	
금융성기금	56 수출보험기금	지식경제부	15,082	5,211	-	12,185	32,478	
	57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20,405	4,000	-	17,496	41,901	
	5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40,045	-	50,000	27,775	117,820	
	5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6,865	30	-	4,373	11,268	
	6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교육과학기술부	797	4,107	-	2,050	6,954	
	61 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8	50	-	305	373	
	62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	농림수산식품부	3	50	-	-	53	

자료: 2009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예결산정보시스템)

상기 62개의 기금 중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상의 상세 내역을 검토하여, 방송발전기금과 수입의 발생유형과 성격('59 기타경상이전수입' 금액의 비중이 높으며, '593 법정부담금', '594 민간출연금'의 금액이 많음)이 유사한 기금을 선정하여 수입추계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유사 유형의 기금으로 선정된 기금은 다음과 같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표 14 > 방송발전기금과 수입유형이 유사한 기금

(단위: 억원)

기금명	수입				합계	자체수입 비율	59 기타경상이전수입				합계	비율	보통부담금 비율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법정부담금	민간출연금	구상채권회수금	기타			
방송발전기금	1,911	318	-	684	2,913	65.6%	1,595	20	-	7	1,622	84.9%	98.3%
관광진흥개발기금	5,857	47	-	994	6,898	84.9%	3,654	-	-	128	3,782	64.6%	96.6%
국민건강증진기금	15,972	-	-	2,282	18,254	87.5%	15,788	-	-	138	15,926	99.7%	99.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81	-	-	148	1,929	92.3%	1,760	-	-	17	1,777	99.8%	99.0%
전력산업기반기금	13,524	104	-	2,960	16,588	81.5%	11,822	-	-	332	12,154	89.9%	97.3%
정보통신진흥기금	7,462	1,060	-	3,909	12,431	60.0%	-	4,403	-	393	4,796	64.3%	91.8%
신용보증기금	20,405	4,000	-	17,496	41,901	48.7%	-	7,707	5,422	297	13,426	65.8%	57.4%
기술신용보증기금	10,216	1,000	-	6,930	18,146	56.3%	-	4,291	2,600	212	7,103	69.5%	6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793	8,095	-	7,024	19,912	24.1%	-	1,746	1,793	184	3,723	77.7%	46.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865	30	-	4,373	11,268	60.9%	-	4,122	1,230	56	5,408	78.8%	76.2%

자료: 2009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중 (국회 예산산정정보시스템)

상기 유사 기금의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검토, 해당 기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하여 수입추계방법을 파악하였으나, 대부분 기법화된 수입추계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과거연도 실적을 평균하거나 과거연도 실적의 증감율을 평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유사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법정부담금 = 출국납부금 + 카지노납부금
- 출국납부금 :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기금(1만원, 선박 1천원)을 부과, 2004년 7월부터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부과함 : 출국인원, 징수인원 추정 필요 -> 최근 4년간 출국인원 평균 증가율 적용 (2008)
- 카지노납부금 : 카지노 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카지노 사업자의 총 매출액 추정 필요 -> 강원랜드 11% 감소 예상, 외국인카지노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적용 (2007)
- 인터뷰 : 전년 3개년/5개년의 실적을 평균하여 예상 증감율을 산출한 후 출국자수 증감여부 추정, 카지노 매출의 몇 개년 평균 증감율을 고려하여 산출.

(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9월에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 중 켈런 20개피 1갑당 354원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반출량 * 354원/갑
- 담배반출량 추정 필요 -> 직전 5개년 담배반출량을 평균하여 추정
-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통계전문가에게 맡겨서 담배 반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추계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자력법 제10조의3에 의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법정부담금 : 원자력법 제9조의3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료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주))가 부담하는 금액
- 법정부담금 = 전년도(추정당해연도) 원자력 발전량(kWh) * 1.2원/kWh
- 원자력발전량 추정 필요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지식경제부, 2006.12)에서 계획된 해당연도의 원자력발전량 전망치를 기준으로 산정

(4)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지속한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법정부담금 : 전기요금의 3.7% (2006년 이전 4.591%)
- 전기요금 추정 필요 -> 직전 3년간 전력 판매량 증가율의 산출평균에 전기요금인상분과 전력사용예상정도를 고려하여 산출
-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전기요금과 함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기금수입이 매우 안정적

임에도 수입추계를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중략), 적정규모의 수입 액을 계상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통신사업자부담금 : 연구개발부담금(*) + IMT2000 출연금 +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보증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
 - (*) 연구개발부담금 : 기간통신출연금(**) + 별정통신출연금
 - (**) 기간통신출연금 : 이동통신출연금 + 유선통신출연금
- 2009년 법률 개정으로 부담금 산정 방식이 개정됨
- 별정통신출연금 : 최근 3년간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반영

- 용자원금 회수 : 만기원금 회수 + 조기원금 회수
- 조기원금 회수(2008년) : 2006년도 만기미도래 용자원금 중에서 조기회수된 용자원금의 비율(5.5%) 반영하여 추정 (즉, 직전연도 조기회수율 이용)
- 용자이자수입 : (분기별 평잔 * 수입이자율) / 4
- 예탁금이자수입 : (단기예탁금 평잔 * 단기수익률) + (장기예탁금 평잔 * 장기수익률)

-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계획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업자 부담금, 용자원리금 및 투자원금, 배당금의 중장기 수입전망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통신사업자 부담금의 중장기 수입전망(한국항공대) : 유, 무선 통신사업자별 시장전망을 토대로 전망하되, 2G 이동전화서비스의 3G 전환, 1인 가구 유선전화의 이동전화 전환, WiBro의 초고속인터넷 전환효

과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시장규모를 전망

- 용자원금 및 이자수입의 중장기 수입전망(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용자원금의 조기상환의 발생원인 분석, 조기상환 및 만기회수 용자원금 예측, 연도별 용자원금 평잔, 연도별 대하이자율 및 이자 전망
-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중장기 수입전망((주)에스아이미디어) :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VC(벤처캐피탈) 배분계획 조사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농림수산업신용보증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수입 및 수입추계방법에 대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출연금 = 용자금 또는 대출금 * 3/1000 또는 5/1000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
- 금융기관에서 매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서 대출금을 파악하여 연간 누적된 금액에서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실제 예측치는 최근 여러 해의 대출금의 증감율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함.

4. 유사연구보고서 사례 검토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성격이 유사한 연구보고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추계 관련 연구보고서가 검토되었다.

- 통신사업자 부담금의 중장기 기금수입 전망(한국항공대학교, 2007.5)
- 용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추계모델 개발 및 수입계획 전망(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5)

1) 통신사업자 부담금의 중장기 기금수입 전망 보고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장기 수입계획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융합 및 신규서비스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변모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규모 및 개별서비스 규모를 예측하여 각 통신사업자별 부담금을 전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 전망 및 부담금 전망

- 무선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음성통신, 데이터통신), 무선고정통신(B-WLL), 위성통신으로 구분하여 분석
- 매출액 규모 전망 : 가입자수, ARPU를 추정하여 전망
- 이동전화 가입자수 전망 : 시장조사기관(Gartner, Ovum)의 가입자 전망치,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구성 추이자료, 일본의 2G에서 3G로의 전환 과정을 참조하여 HSDPA로의 전환기간 고려, 2006년 이동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이 2015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
- 이동전화 ARPU 전망 : 과거 ARPU 추이를 반영하여 음성 ARPU와 데이터 ARPU로 구분하여 전망. 음성 ARPU는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씩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데이터 ARPU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
- 통신사업자 부담금 전망 : 사업자의 매출액의 0.5%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0.75%) 부과. 또한 2011년부터 주파수 할당대가로 주파수 할당기간 예상매출액의 3%를 부과

(2) 유선통신 서비스 시장 전망 및 부담금 전망

- 유선통신서비스는 전화서비스(유선전화, 공중전화, 인터넷전화), 전용회선 및 초고속망 서비스로 구성

- 각 서비스의 매출액 규모 전망 : 가입자수, ARPU를 추정하여 전망
- 유선전화 가입자수 전망 : 통계청의 가구수 전망 자료와 1인 가구의 이동전화 대체를 고려하여 추정. 매년 5%씩 이동전화로 대체하여 2015년의 모든 1인 가구가 대체되는 것으로 가정
- 유선전화 ARPU 전망 : 접속료가 제외된 매출액 추이 이용, 2005년 ARPU에서 2005년 증감율인 매년 3%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 VoIP 가입자수 전망 : 과거에 수행하였던 타 기업의 기업용 VoIP 서비스 수요 조사와 가정용 VoIP 서비스 수요조사를 이용. 수요조사상의 가입의향 비율을 적용
- VoIP 서비스 ARPU 전망 : 수요조사상의 제시된 서비스 요금과 기존 유선전화 요금을 비교하여 VoIP 서비스의 ARPU 예상

2) 융자원금 회수 · 이자수입 추계모델 개발 및 수입계획 전망 보고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IT 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 산업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1993년부터 융합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융자원금 회수에 있어서 비정기조기상환이 발생하는 등 수입계획과 실제 원금회수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입추계 및 수입계획 전망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연구에서는 융자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도출, 과거자료를 통한 기술적 분석, 정부 및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협업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융자원금 회수 및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추계모델을 개발하였다.

(1) 융자원금회수 추계

- 융자원금회수 = 정기상환분 + 조기상환분
-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영향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나, 조기상환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 및 계량화 변수의 적용이 쉽지 않음. 그래서 조기회수비율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행

착오 방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추정

- 2003~2006(4년간)의 대여잔액 및 조기회수액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회수비율 계산 ->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기회수비율을 추정
- 대여잔액과 조기회수비율은 지수함수(ex-potential function) 형태를 유지하도록 시뮬레이션 : 이는 대여잔액이 클수록 조기상환 가능성이 배가 되는 구조를 의미. 대여잔액이 적정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조기회수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대여잔액이 아무리 작아도 4.3% 정도의 조기회수는 항상 발생한다는 논리를 적용
- 직전연도 연도별 대여잔액 추이가 다음연도 원금회수액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기말용자금 잔액 = 기초 용자금 잔액 + 당기 용자금액 - 당기 정기회수액 - 당기 조기회수액
 - 당기 용자금액의 향후 연도별 회수예정액을 반영하여 당기 이후 추정
 - 당기 조기회수 추정액은 과거 4년간('03~'06)의 조기회수비율을 이용하여 산정
 - 당기 조기회수 추정액의 과거 3년간('04~'06)의 평균 연도별 구성비율을 이용하여 조기회수액의 연도별 구성금액을 산정

(2) 용자이자수입 추계

- 실제로는 2015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의 추세를 예측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장기금리 예측 자체가 어렵고 이를 공표하고 있는 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접근
- 대하금리 = 대출금리 - 은행수수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수료 - 기업은행수수료 추가분
- 일반담보용자, 기술담보용자, 기업은행 경유 용자의 금리가 상이함 -> 용자사업별 적용금리를 용자사업별 대여잔액(연초기준)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평균대여이율 산정

- 평균대여이율 = Σ (용자사업별 적용금리 * 용자사업별 대여잔액비중)
- 이자수입 = (기초용자잔액 + 기말용자잔액)/2 * 평균대여이율

5. 과거 통계자료 분석

각 수입 유형별 수입추계를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 장 각 항목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6. 수입추계 개선 방향

지금까지 파악,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입추계방법을 개선하기로 한다. 수입 항목별로 수정된 상세 추계방법은 다음 장 각 항목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 매출금액의 평균이 아닌 매출금액 성장률의 평균을 이용한다
- 최근 3년간의 평균자료를 이용한다
- 단순평균이 아닌 가중평균 개념을 이용한다
- 경기에 따른 변화가능성도 가능한 고려한다
- 시장조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한다
- 매출액 성장률 이외의 다른 변수(예: 시장점유율, 평균징수율 등)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상기 사항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추정 또는 일부 방법을 수정하여 추정한다

IV. 법정부담금및출연금 수입추계방법

1. 법정부담금및출연금 개요

1) 법정부담금및출연금 개요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통하여 각 방송사업자별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에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제외)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래의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통하여 발표한 각 방송사업자별 징수대상, 법정부담금 계산방식, 징수율, 유예여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89, 2008-125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90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9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2009-18

< 표 15 >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징수 개요

대구분	소구분	회사명	징수율 적용 모수	징수율	징수시기
지상파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KBS, EBS	방송광고매출액	3.17%	매월 기금 징수
	☞문화방송, ☞SBS	MBC, SBS	방송광고매출액	4.75%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총 29개)	o 지역문화방송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목포, 원주, 여수, 안동, 충주, 포항, 삼척 o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OBS경인방송	방송광고매출액	3.37%	
	라디오방송사업자	경기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라디오인천, YTN라디오	방송광고매출액	2.87%	
	영어FM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방송광고매출액	2.8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 등 119개사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1/1.3/1.8/2.3/2.8%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사)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2%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사)(겸업 5개사 제외)	화성산업(동백TV몰), 아이디지털홈쇼핑, 에스케이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쇼핑), 케이티하이텔(Paran쇼핑), 티브이버룩시장(TV버룩시장)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0%	
위성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1%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티유미디어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0%	

(주1) KBS, MBC, 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시점까지 유예

(주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관련 매출액 금액에 따라 1% 부터 2.8%까지 누진적으로 적용

(주3)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 결산상 영업이익 *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입계획 대비 실적 비교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은 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등 징수율을 적용하는 모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수입계획을 수립할 때 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의 징수율 적용 모수를 적절하게 잘 추정하여야 한다. 방송광고 매출액 등의 징수율 적용 모수의 추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입계획과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과거 3년 동안의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수입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방송사업자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홈쇼핑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입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 표 16 > 방송사업자별 수입계획 대비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실적 심사중)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2,634	143,050	10,416	146,501	171,154	24,653	160,693	161,350	657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132,324	142,594	10,270	146,065	170,045	23,980	160,333	157,378	(2,955)
기타경상이전수입	310	456	146	436	1,109	673	360	3,972	3,612
법정부담금및출연금									
지상파방송사업자	97,650	97,202	(448)	101,807	100,358	(1,449)	92,728	94,097	1,36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8,412	19,174	762	21,710	23,319	1,609	26,269	28,614	2,34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2,095	25,267	13,172	20,278	35,298	15,020	35,616	28,793	(6,823)
위성방송사업자	3,167	-	(3,167)	-	-	-	3,800	3,544	(256)
법정부담금 소계	131,324	141,643	10,319	143,795	158,975	15,180	158,413	155,048	(3,365)
민간출연금	1,000	951	(49)	2,270	11,070	8,800	1,920	2,330	410
법정부담금및출연금 합계	132,324	142,594	10,270	146,065	170,045	23,980	160,333	157,378	(2,955)
계획대비실적비율(차이율)			7.8%			16.4%			-1.8%

자료: 2006, 2007, 2008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기금결산검토보고서

방송사업자별 상세 분석은 다음 장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나 우선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실적을 분석해 보면, 2005년, 2006년의 경우 보험매출 등의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인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06년, 2007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이 수입계획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나, 2007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의 성장 등으로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반면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송출수수료의 증가(2006년 2,590억원 -> 2007년 3,167억원)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2008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이 수입계획에 미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등 징수율을 곱하는 모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정확한 수입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표 17 >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1,707,890	1,884,944	1,927,808	2,100,955	2,424,403
영업이익	349,953	367,698	315,757	354,622	377,077
영업이익 증감율	84.5%	5.1%	-14.1%	12.3%	6.3%

자료: 홈쇼핑방송사업자 5개사의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합계액

(*) 2009년 금액 : 반기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씨제이오쇼핑과 지에스홈쇼핑의 2009년 반기 재무제표상의 실적을 근거로 2개사 평균 성장률을 전체로 확장하여 추정한 금액

3)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과 조달금액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90일 ~ 120일인 어음으로 수령하는 관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사업수입 금액(징수부과액)과 실제 조달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차이 금액은 매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의 미수금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조달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인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등의 금액에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금 손익계산서상의 사업수익과 일치함.
-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에 기초 미수금 및 기말 미수금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금 현금흐름표상의 사업수익으로 인한 유입액과 일치함.

이런 이유로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조달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광고매출액 등의 금액에 징수율을 적용하여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에 기초, 기말 미수금을 고려하여 조달금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및 징수부과액

최근 3년 동안의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조달금액과 징수부과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아 조달금액과 징수부과액이 일치하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민간출연금의 경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표 18 > 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및 징수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조달금액	징수부과액	조달금액	징수부과액	조달금액	징수부과액
지상파방송사업자	97,202	97,057	100,358	94,652	94,097	86,28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9,174	19,186	23,319	23,306	28,514	28,513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	25,267	25,267	35,298	35,298	28,793	28,793
위성방송사업자	-	-	-	-	3,544	3,545
법정부담금 소계	141,643	141,510	158,975	153,256	154,948	147,137
민간출연금	951	951	11,070	11,820	2,430	1,950
법정부담금및출연금 합계	142,594	142,461	170,045	165,076	157,378	149,087

(주) 2008년 내역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미세 조정함

(2) 미수금 내역

최근 3년 동안의 기금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8 > 미수금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지상파방송사업자 미수금	33,714	28,008	20,19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미수금	13	-	-
민간출연금 미수금	-	750	270
임차보증금 미수금	-	-	17
미수금 합계	33,727	28,758	20,484

(3)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최근 3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의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부과액에 기초 미수금을 가산하고 기말 미수금을 차감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자금조달액과 일치하고 있다.

< 표 19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징수부과액	97,057	94,652	86,286
기초 미수금	33,859	33,714	28,008
기말 미수금	33,714	28,008	20,197
지상파방송사업자 조달금액	97,202	100,358	94,097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최근 3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의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징수부과액에 기초 미수금을 가산하고 기말 미수금을 차감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자금조달액과 일치하고 있다.

< 표 20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징수부과액	19,187	23,306	28,514
기초 미수금	-	13	-
기말 미수금	13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조달금액	19,174	23,319	28,514

(5) 민간출연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최근 3년 동안 민간출연금의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의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민간출연금의 징수부과액에 기초 미수금을 가산하고 기말 미수금을 차감하면 민간출연금 자금조달액과 일치하고 있다.

< 표 21 > 민간출연금의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조달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민간출연금 징수부과액	951	11,820	1,950
기초 미수금	-	-	750
기말 미수금	-	750	270
민간출연금 조달금액	951	11,070	2,430

2.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방송법 제37조 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징수율은 문화방송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89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125 ‘신규 영어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통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방송, 문화방송, 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 22 >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대구분	소구분	회사명	징수율 적용 모수	징수율	징수시기
지상파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KBS, EBS	방송광고매출액	3.17%	매월 기금 징수
	문화방송, SBS	MBC, SBS	방송광고매출액	4.75%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총 29개)	o 지역문화방송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목포, 원주, 여수, 안동, 충주, 포항, 삼척 o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OBS경인방송	방송광고매출액	3.37%	
	라디오방송사업자	경기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라디오인천, YTN라디오	방송광고매출액	2.87%	
	영어FM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방송광고매출액	2.87%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당해연도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입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징수 당해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연도인 징수 직전연도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우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을 추정한 이후 평균 어음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초, 기말 미수금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조달금액을 추정한다.

$$\begin{aligned}
 & \boxed{\text{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boxed{\text{징수 당해연도 방송 광고매출액}} * \boxed{\text{징수율(2.87~4.75\%)}} \\
 & \boxed{\text{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 \boxed{\text{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boxed{\text{기초 미수금}} - \boxed{\text{기말 미수금}}
 \end{aligned}$$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추정액 산정 과정을 통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징수 직전연도(2008년) 방송광고 매출액 추정

1. 2008년 1월 ~ 5월 실제 매출액 파악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홈페이지 이용
2. 2008년 6월 ~ 12월 매출액 추정 : 과거 4년간(2004~2007)의 6월 ~ 12월 매출액 평균치로 추정
3. 2008년 방송광고 매출액 추정 : 상기 1+2

(2) 징수 당해연도(2009년) 방송광고 매출액 추정

1. 방송광고 매출액 성장률 추정 : 0.5%
2. 2009년 방송광고매출액 추정 : 2008년 방송광고매출액 * (1+성장률)

(3)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1.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정 : 과거 3년간(2005~2007) 그룹별 방송광고 매출액 평균을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
* 사업자 그룹 :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
2. 사업자 그룹별 징수부과액 추정 : (2009년 방송광고매출액 * 사업자 Group별 시장점유율 * 사업자 Group별 징수율)
3.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sum (사업자 그룹별 상기 2 징수부과액)

(4)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추정

1. 평균 어음회수기간 추정 : 3.5개월로 가정
2. 사업자 그룹별 조달금액 추정 : 2008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3.5/12$ + 2009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8.5/12$
3.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추정 : \sum (사업자 그룹별 상기 2 조달금액)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2008년 6월~12월 방송광고 매출액 추정시 과거 4년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 -> 방송광고 매출액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경우 이러한 감소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방송광고 매출액의 성장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방송사별 시장점유율을 과거 7년간의 평균 점유율로 추정 -> 단순 평균함으로써 최근연도의 상황을 보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장점유율의 증감을 또는 최근연도 비중을 더 많이 반영하는 가중평균 등의 방법 이용 가능
- 방송광고매출액 성장률이 최근의 감소추세를 고려할 경우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감소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반영
- 어음회수기간을 3.5개월로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미수금을 분석하여 보면 다소 다르게 발생하고 있음 -> 미수금 회수 현황이 반영된 실질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추정

3) 과거 실적 분석 및 징수부과액 재추정

방송광고 매출액 및 징수부과액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별 연도별 방송광고매출액 추이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별 매 연도 실제 방송광고매출액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3 > 사업자 그룹별 방송광고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자 그룹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2009년(E)
KBS, EBS	603,530	758,488	704,735	656,565	686,214	700,844	623,359	556,699	372,952	497,269
MBC, SBS	998,671	1,242,960	1,199,907	1,144,913	1,103,157	1,147,115	1,146,098	1,045,382	601,677	802,236
지역방송	519,451	637,221	657,033	620,863	551,710	541,490	543,934	502,950	292,096	389,461
라디오방송	71,960	81,310	79,452	77,265	75,546	73,695	74,331	71,271	39,029	52,039
합계	2,193,612	2,719,979	2,641,127	2,499,606	2,416,627	2,463,144	2,387,722	2,176,302	1,305,754	1,741,005
방송광고매출액 증감률		24.0%	-2.9%	-5.4%	-3.3%	1.9%	-3.1%	-8.9%		-20.0%

자료: 2009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 사업별 설명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

(주1) 방송광고비 총액 :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상의 총 방송광고비에서 지상파 DMB 방송광고비와 KBS LA TV 방송광고비는 제외한 금액

(주2) 2009년 9월 MBC, 지역MBC 금액 :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에는 MBC와 지역MBC 방송광고비가 통합하여 공시되어, 이를 과거 비율에 따라 임의 배분한 금액

(주3) 2009년(E) 금액 : 2009년 9월까지의 방송광고비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

(2) 지상파방송사업자별 연도별 법정부담금 징수율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별 연도별 법정부담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2003년과 2005년에 징수율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표 24 > 사업자 그룹별 법정부담금 징수율 추이

사업자 그룹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KBS, EBS	3.50%	3.50%	3.50%	3.50%	3.17%	3.17%	3.17%	3.17%	3.17%
MBC, SBS	5.25%	5.25%	5.25%	5.25%	4.75%	4.75%	4.75%	4.75%	4.75%
지역방송	5.25%	5.25%	4.37%	4.37%	3.37%	3.37%	3.37%	3.37%	3.37%
라디오방송	5.25%	5.25%	4.37%	4.37%	2.87%	2.87%	2.87%	2.87%	2.87%
			징수율 변경		징수율 변경				

(3) 지상파방송사업자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재추정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별 방송광고매출액에 각 연도별 법정부담금 징수율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을 재추정해 보았으며, 징수율이 변경되는 2003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징수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간부터 해당 징수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차이가 일부 발생

하고 있다.

< 표 25 > 사업자 그룹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재추정

(단위: 백만원)

사업자 그룹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E)
KBS, EBS	21,124	26,547	24,666	22,980	21,753	22,217	19,760	17,647	15,763
MBC, SBS	52,430	65,255	62,995	60,108	52,400	54,488	54,440	49,656	38,106
지역방송	27,271	33,454	28,712	27,132	18,593	18,248	18,331	16,949	13,125
라디오방송	3,778	4,269	3,472	3,376	2,168	2,115	2,133	2,045	1,494
합계	104,603	129,525	119,845	113,596	94,914	97,068	94,664	86,298	68,488
실제 징수부과액 차액		129,525	123,224	114,109	102,442	97,057	94,652	86,286	
		0	(3,379)	(513)	(7,528)	11	12	12	

4)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분석

방송광고시장 예측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사례를 검색하여 방송광고시장 예측 기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수입추계방법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방송광고시장 예측을 위하여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량분석모형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단순명료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가 매년 수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계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방송광고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 방송광고시장 예측에 관한 연구(한국방송광고공사, 박원기, 이상돈, 2009, 2008, 2007, 2006)

- 총광고비와 매체별 광고비를 추정하는 연구
- 총광고비 추정 : 계량모형을 이용한 예측, 광고집약도(GDP 대비 광고비 비중)를 이용한 예측, 설문조사를 이용한 예측의 단순평균
 - 계량모형을 이용한 예측 : 구조방정식 모형, ARIMA 모형, BVAR 모형 이용
 - 구조방정식 모형 : 총광고비 vs 국내소비지출의 회귀분석
 - ARIMA 모형 : 과거 매체별 광고비 자료 시계열 분석

- 매체별 광고비 추정 : 과거 매체 점유율을 이용한 예측, 계량 모형을 이용한 예측, 설문조사를 이용한 예측의 단순평균
 - 계량 모형을 이용한 예측 : ARIMA 모형(단기), BVAR 모형(중장기)

(2) 21세기를 대비한 방송종합정책 연구(한국방송진흥원, 이우승, 1999)

- 1971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까지의 광고비를 예측
- 소득에 대한 광고비의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로그 변환한 회귀분석을 수행
- 한국개발연구원이 1999년 11월 발표한 2001~2010년 기간의 잠재성장률(5.1%)과 소비자물가상승률(2%)을 기준으로 광고시장을 예측

(3) 매체와 산업광고비 예측에 관한 방법론 : SUR과 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김광수, 2003)

- 광고비 예측의 방법론에 관하여는 회귀방정식과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외관상 관련이 없는 변인들의 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신문광고비와 TV광고비를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실측치와 예측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SUR 방법이 회귀방정식보다 오차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4) 지상파DMB서비스 수요예측 및 광고시장 전망(한국방송광고공사, 박천일, 2004)

-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상파 DMB 광고시장을 예측
- 첫째, 전문가들과의 심층 설문을 통하여 지상파 DMB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 후, 여기에 적절한 조정계수들을 적용함으로써 지상파DMB 광고시장의 규모를 추정

(5) 방통융합시대 KOBACO체제 공적기능 강화방안(한국방송광고공사, 정두남, 2006)

- 지상파 TV와 온라인 광고비를 예측한 연구
- 일정기간 동안 지상파 TV와 유료 TV, 온라인 광고비의 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 매체의 평균 점유율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GDP 전망치에 곱하여 광고비를 산출

(6) 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에 따른 지상파 광고시장에의 영향 분석(한국광고홍보학회, 여송필, 2008)

- 한미FTA 협정과 관련하여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철폐가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11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의 0.69%에 해당하는 211억 5,9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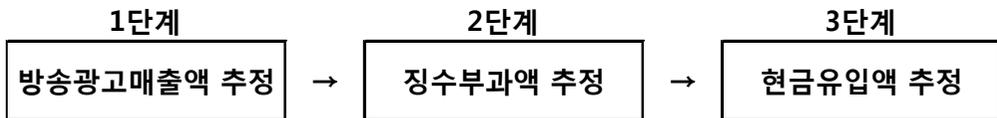
(7) 방송광고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경쟁도입 : 시청률 10% 이상인 프로그램 가격 12.2% 상승, 시청률 10% 미만인 프로그램 가격 19.7% 하락 -> 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 6.8% 증가 예상
- 가격정상화와 함께 광고수요 증가(20% 증가) & 시청률 상승(1%)으로 추가적인 매출액 예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DSI)는 전체적으로 방송광고매출액 약 4,863억원 증가 예상

5)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개요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1단계 : 방송광고매출액 추정

1. 징수 직전연도 1월~5월 실제 매출액 파악
2. 징수 직전연도 방송광고매출액 추정
3. 징수 당해연도 방송광고매출액 추정 = 직전연도 방송광고매출액(E) * (1 + 성장률)

2단계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1.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정
2. 평균징수율 추정 = $\sum(\text{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 \text{그룹별 징수율})$
3. 징수부과액 산정 = 징수 당해연도 방송광고매출액(E) * 평균 징수율

3단계 :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1. 기초/기말 미수금 추정
2.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기초 미수금 - 기말 미수금

(2) (1단계) 방송광고매출액 추정

① 징수 직전연도 1월 ~ 5월 실제 매출액 파악

-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상의 방송광고비 파악 : 총 방송광고비에서 지상파DMB방송광고비, KBS LA TV 방송광고비를 차감

② 징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추정

- 징수 직전연도 1월 ~ 5월 실제 매출액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연 매출액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연 환산비율을 이용 :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 직전연도 5월 누적 매출액 * 연 환산비율
- (대안 2)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이용 :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 연구보고서상의 추정치의 평균
- (대안 3) 상기 대안 1과 대안 2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 :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 (대안 1 + 대안 2) / 2

* 연 환산비율 : 과거 통계자료(1994년~2008년 15년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경기 상황에 따라 월별 매출액 발생 유형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 이를 이용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5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함.

- 정상적인 경기 상황인 경우 : 1월~5월 매출액 비율 = 약 40% -> 연 환산비율 = $1 / 0.4 = 2.50$
- (광고시장위축) 하반기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1월~5월 매출액 비율 = 약 43.5% -> 연 환산비율 = $1 / 0.435 = 2.30$
- (광고시장회복) 하반기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1월~5월 매출액 비율 = 약 35.5% -> 연 환산비율 $1 / 0.355 = 2.82$

(예) 2009년에 2010년 추정 시 : 직전연도(2009년) 연간 매출액 추정

① 2009년 1월~5월 실제 매출액 = 652,222백만원

② 2009년 연간 매출액(광고시장회복기로 하반기 매출 증가가 예상된

다고 판단) = 652,222백만원 * 2.82 = 1,839,266백만원

(예) 한국방송공사 연구보고서 이용하는 경우 : 1,863,350백만원(방송광고시장에 관한 연구(박원기, 이상돈, 200812))

< 표 26 > 5월까지의 누적 방송광고매출액 과거연도 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연간 방송광고매출액	1,130,237	1,470,864	1,798,360	1,779,136	1,162,786	1,666,940	2,317,883	2,193,612
1월~5월 방송광고매출액	439,788	568,624	719,039	734,984	507,848	591,604	918,261	850,399
연 매출액 대비 비율	38.9%	38.7%	40.0%	41.3%	43.7%	35.5%	39.6%	38.8%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방송광고매출액	2,719,979	2,641,127	2,499,606	2,416,627	2,463,144	2,387,722	2,176,302
1월~5월 방송광고매출액	1,067,985	1,151,166	1,078,541	957,035	1,025,228	973,098	953,931
연 매출액 대비 비율	39.3%	43.6%	43.1%	39.6%	41.6%	40.8%	43.8%

	과거 8년간 2001년 이후	과거 15년간 1994년 이후	연 환산비율
평균적인 산업주기를 고려할 경우		40.0%	35.9%
불황으로 하반기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43.5%	43.6%
하반기매출이 살아나는 경우		35.5%	35.5%
매월 매출액이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5개월/12개월	41.7%	

* 상기 방송광고매출액은 법정부담금 징수대상 금액으로 DMB 광고매출액, KBS LA-TV 광고매출액은 빠져 있음.
(From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

③ 징수 당해연도 연간 매출액 추정

- 징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과 시장성장률을 반영하여 징수 당해연도 연간 매출액 추정.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여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세 분석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임. 향후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세자료 이용 가능
- (대안 1) 시장조사기관의 시장성장률 자료 평균치 이용
- (대안 2)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성장률의 가중평균 이용 -> 경제위기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현저히 축소되어 정상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지 않으므로 과거 성장률을 단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대안 3) 인과관계가 높은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률 추정 -> 광고시장성장률 추정 -> 방송광고시장 성장률 추정' 가능 -> 통계

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시장조사기관의 시장성장률 자료 이용

- 제니스옵티미디어 추정 : 대표적인 시장조사 및 예측기관, 2009년 전 세계 TV 광고시장규모 5.5% 하락 예상
- PwC 추정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9~2013' (PwC. 2009) 발표를 통해 2009~2013년 전세계 광고시장 전망. 12개 Industry sector, 48개국 5년 추정치 발표, 한국의 경우 2009년에 (-) 24.1%, 2010년에 (-) 2.3% 추정
- Informa Telecoms & Media 추정 : Global TV Advertising Forecasts(Informa Telecoms & Media, 2009.03) 발표를 통해 2009년 전세계 텔레비전 광고시장 전망.

*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성장률의 가중평균 이용

- 2007년 (-) 3.1%, 2008년 (-) 8.9%, 2009년 (-) 15.5% 예상 (직전연도 매출액을 대안 1에 의해 추정하는 경우)

(3) (2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①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정

- 사업자 그룹별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증감율을 가중평균하여 추정

② 평균 징수율 추정

- 평균 징수율 = \sum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 사업자 그룹별 징수율)

③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징수 당해연도 방송광고매출액 * 평균징수율

< 표 27 > 사업자 그룹별 시장점유율 및 평균 징수율 추정

시장점유율	2006년	2007년	2008년	단순평균	가중평균
KBS, EBS	28.5%	26.1%	25.6%	26.7%	26.2%
MBC, SBS	46.6%	48.0%	48.0%	47.5%	47.8%
지역방송	22.0%	22.8%	23.1%	22.6%	22.8%
라디오방송	3.0%	3.1%	3.3%	3.1%	3.2%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장점유율 증감율	2006년	2007년	2008년	단순평균	가중평균
KBS, EBS	0.1%	-2.3%	-0.5%	-0.9%	-1.0%
MBC, SBS	0.9%	1.4%	0.0%	0.8%	0.6%
지역방송	-0.8%	0.8%	0.3%	0.1%	0.3%
라디오방송	-0.1%	0.1%	0.2%	0.0%	0.1%
	0.0%	0.0%	0.0%	0.0%	0.0%

평균 징수율	2008년 MS	증감율	2009년 MS(E)	증감율	2010년 MS(E)	징수율	평균 징수율
KBS, EBS	25.6%	-1.0%	24.5%	-1.0%	23.5%	3.2%	0.7%
MBC, SBS	48.0%	0.6%	48.7%	0.6%	49.3%	4.8%	2.3%
지역방송	23.1%	0.3%	23.4%	0.3%	23.7%	3.4%	0.8%
라디오방송	3.3%	0.1%	3.4%	0.1%	3.5%	2.9%	0.1%
	100.0%	0.0%	100.0%	0.0%	100.0%		4.0%

(4) (3단계)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① 직전연도 기초 미수금 파악

- 결산상 실제 미수금

② 평균 회수기간 추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90일~105일인 어음으로 수령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정책적 회수기간 반영 (예: 105일, 90일 등)
- (대안 2) 과거 회수기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예: 매출액 대비 미수금 비율의 가중평균)

③ 직전연도 기말 미수금 추정

- 직전연도 기말 미수금 = 직전연도 방송광고매출액(E)*회수기간/365

④ 해당연도 기말 미수금 추정

- 당해연도 기말 미수금 = 당해연도 방송광고매출액(E)*회수기간/365

⑤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기초 미수금 - 기말 미수금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방송법 제37조 제3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사업으로 인한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9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 28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대구분	소구분	회사명	징수율 적용 모수	징수율	징수시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 등 119개사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1/1.3/1.8/ 2.3/2.8%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주) 징수율 : 방송관련매출액 규모에 따라 1.0 ~ 2.8%까지의 누진율 적용

방송관련매출액	25억원 이하	25억원 ~ 50억원	5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200억원	200억원 초과
징수율	방송관련매출액 * 1%	25백만원 + 25억원 초과 방송관련매출액 * 1.3%	57.5백만원 + 50억원 초과 방송관련매출액 * 1.8%	147.5백만원 + 100억원 초과 방송관련매출액 * 2.3%	377.5백만원 + 200억원 초과 방송관련매출액 * 2.8%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직전연도(수입계획 수립연도)의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계획 수립시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boxed{\text{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 부담금}} = \boxed{\text{징수 직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boxed{\text{징수율(1.0~2.8\%)}}$$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추정 과정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징수 직전연도(2008년) 방송 관련 매출액 추정

1. 2007년 실제 방송 관련 매출액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참조
2. 방송 관련 매출액 성장률 추정 : 10% (최근 매출액 성장추세와 경쟁 매체인 IPTV 도입 등을 고려하여 10% 증가 예상)
3. 2008년 방송 관련 매출액 추정 : 2007년 방송 관련 매출액 * (1 + 성장률)

(2) 징수연도(2009년) 평균징수율 추정

1. 2008년 평균 징수율 산정 : 1.852%
2. 2009년 평균 징수율 추정 : 2008년 평균 징수율 * 매출액 성장에 따른 징수율 인상율(103%)
* 매출액 성장에 따른 징수율 인상율 : 징수율이 매출액 구간에 따른 초과 누진징수율을 적용하므로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징수율도 인상됨

(3)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1. 2009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2008년 방송 관련 매출액 * 2009년 추정 평균 징수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방송 관련 매출액 성장률을 단순하게 10%로 추정. 2004년에는 경상 GDP성장률인 9%로 추정, 2006년 및 2009년에는 10%로 추정 ->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임. 매출액 성장률 추세를 이용하거나 시장연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매출액 성장에 따른 징수액 인상율을 3%로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징수액 인상율이 실제 인상율보다 다소 낮아보임. 추가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인상율 반영 필요
- 징수율 적용 방법에는 2009년 기금운용계획에서의 방법처럼 직전연도 징수율에 매출액 상승에 따른 징수율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법과 과거연도 징수율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매출액 성장에 따른 징수액 인상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징수율 증감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고려

3) 과거 실적 분석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 관련 매출액 및 징수부과액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연도별 방송관련매출액 추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 연도 총 매출액 및 방송관련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총 매출액의 경우 매년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방송관련매출액의 경우에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가, 2008년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다소 감소율이 낮아진 상황이다.

< 표 29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 및 방송관련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매출액	1,581,807	1,846,748	2,135,834	-
방송관련매출액	1,164,392	1,325,351	1,527,206	1,683,873
방송관련매출액 구성비율	73.61%	71.77%	71.50%	-
총 매출액 성장률	17.35%	16.75%	15.65%	-
방송관련매출액 성장률	12.69%	13.82%	15.23%	10.26%

자료: 2004년~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사업별 설명자료

(주) 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상에는 2007년 총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음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연도별 법정부담금 평균징수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징수율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초과누진율제를 이용하고 있다. 각 연도의 직전연도말 방송관련 매출액 대비 법정부담금 평균징수율을 산정하였다.

< 표 30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연도별 법정부담금 평균징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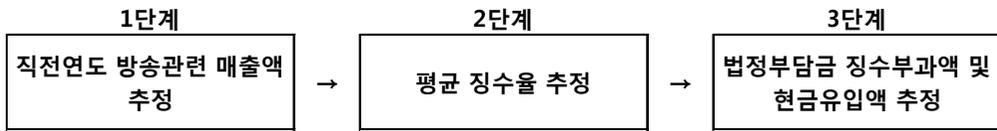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방송관련매출액(실적)	1,164,392	1,325,351	1,527,206	1,683,873
법정부담금	16,271	19,186	23,306	28,513
평균징수율(전기매출액대비)	1.57%	1.65%	1.76%	1.87%

4)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개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1.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2.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 성장률)

2단계 : 평균 징수율 추정

1. 과거 징수율 산정 : 징수율 = 징수액 / 직전연도말 방송관련 매출액
2. 평균 징수율 추정 : 직전 3년간의 징수율 증감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반영한 평균 징수율

3단계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1.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추정 평균 징수율
2.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2) (1단계)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①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②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 성장률을 이용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징수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매출

액 * (1 + 가중평균성장률)

- (대안 2) 시장성장률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이용

* 가중평균 성장률 : 방송관련 매출액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개년간의 방송관련 매출액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표 31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중평균성장률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매출액	1,581,807	1,846,748	2,135,834	-
방송관련매출액	1,164,392	1,325,351	1,527,206	1,683,873
방송관련매출액 구성비율	73.61%	71.77%	71.50%	-
총 매출액 성장률	17.35%	16.75%	15.65%	-
방송관련매출액 성장률	12.69%	13.82%	15.23%	10.26%
			최근 3년간 가중평균	12.51%

(주1) 최근 3년간 가중평균 : 2008년 가중치 3, 2007년 가중치 2, 2006년 가중치 1로 하여 가중평균한 금액

(3) (2단계) 평균 징수율 추정

- ① 과거 징수율 산정 : 징수율 = 징수액 /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② 가중평균징수율 추정
 - 징수율의 증감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율 증감을 가중평균하여 평균 징수율 추정
 -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과 일관성 유지

< 표 32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중평균징수율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방송관련매출액(실적)	1,164,392	1,325,351	1,527,206	1,683,873
법정부담금	16,271	19,186	23,306	28,513
평균징수율(전기매출액대비)	1.57%	1.65%	1.76%	1.87%
평균징수율의 증감		0.07%	0.11%	0.11%
평균징수율 증감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0.10%
추정 평균징수율 = 2008년 평균징수율 + 증감율				1.97%

(4) (3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추정 평균징수율

②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과거 추세상 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수부과액과 동일하다고 봄)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방송법 제37조 제4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통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기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9에 의하여 그 이전 고시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새로이 고시하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 33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대구분	소구분	회사명	징수를 적용 모수	징수율	징수시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사)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2%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사)(겸업 5개사 제외)	화성산업(동백TV물), 아이디지털홈쇼핑, 에스케이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홈쇼핑), 케이티하이텔(Paran쇼핑), 티브이버룩시장(TV버룩시장)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0%	

(주)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 결산상 영업이익 *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직전연도(수입계획 수립연도)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계획 수립시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boxed{\text{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 부담금}} = \boxed{\text{징수 직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 \boxed{\text{징수율(10%/12%)}}$$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조달금액 추정액 산정 과정을 통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징수 직전연도(2008년)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추정

1. 2007년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참조
2.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성장률 추정 : 2% (2009년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관련 영업이익은 SO 송출수수료 증가 및 IPTV를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그 증가율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3. 2008년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추정 : 2008년 방송관련 영업이익 = 2007년 방송관련영업이익 * (1 + 성장률)

(2)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1. 2009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2008년 방송관련 영업이익 * 징수율(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단순하게 2%로 추정. 과거 실제 결산상 영업이익의 성장률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 영업이익 성장률 추세를 이용하거나 시장연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2009년 새로 추가된 데이터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추가 반영 필요

3) 과거 실적 분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으로 인한 결산상 영업이익 및 징수부과액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방송사업자)의 매 연도 총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2006년의 경우 보험매출 등의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인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 등으로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반면,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송출수수료가 크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매출액 성장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 표 34 >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매출액	1,707,890	1,884,944	1,927,808	2,100,955
총 영업이익	349,953	367,698	315,757	354,622
영업이익율	20.49%	19.51%	16.38%	16.88%
총매출액 증감율	19.3%	10.4%	2.3%	9.0%
총영업이익 증감율	84.5%	5.1%	-14.1%	12.3%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방송관련매출액	1,278,045	1,419,062	1,446,705	1,555,543
방송관련영업이익	252,670	293,857	236,957	262,562
방송관련영업이익율	19.8%	20.7%	16.4%	16.9%
방송관련매출액 증감율	18.6%	11.0%	1.9%	7.5%
방송관련영업이익 증감율	113.8%	16.3%	-19.4%	10.8%

자료: 2007년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홈쇼핑방송사업자 5개사의 감사보고서

< 표 35 >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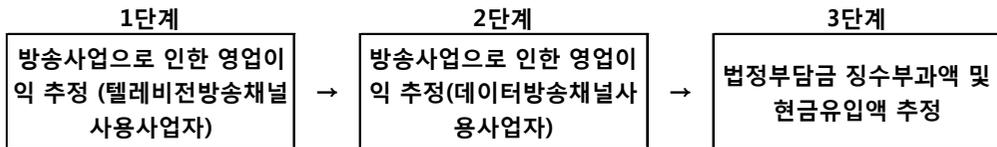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방송관련영업이익	252,670	293,857	236,957	262,562
법정부담금	11,817	25,267	35,298	28,793
	10%	10%	12%	12%

4)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개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방송사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추정(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 파악
2.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추정 =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1 + 성장률)

2단계 : 방송사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추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 파악
2.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추정 =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1 + 성장률)

3단계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1.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sum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징수율(12% / 10%))
2.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2) (1단계/2단계)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추정

①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 파악

②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을 이용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징수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1 + 가중평균 성장률)
- (대안 2) 시장성장률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이용
 - * 가중평균 성장률 : 방송관련 영업이익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개년간의 방송관련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표 36 >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영업이익의 가중평균 성장률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방송관련매출액	1,278,045	1,419,062	1,446,705	1,555,543
방송관련영업이익	252,670	293,857	236,957	262,562
방송관련영업이익율	19.8%	20.7%	16.4%	16.9%
방송관련매출액 증감율	18.6%	11.0%	1.9%	7.5%
방송관련영업이익 증감율	113.8%	16.3%	-19.4%	10.8%
			최근 3년간 가중평균	1.67%

- 다만,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송사업으로 인해서는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부담금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표 37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순번	법인명	채널명	공급분야	방송유형	겸영여부
1	화성산업(주)	동백TV물	홈쇼핑	Data	-
2	(주)우리홈쇼핑	롯데티몰(Lotte T-Mall)	홈쇼핑	Data	겸영
3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	홈쇼핑	Data	-
4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하나로텔레콤홈쇼핑	홈쇼핑	Data	-
5	(주)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Tmall	홈쇼핑	Data	겸영
6	(주)씨제이오쇼핑	Cjtmall(씨제이티몰)	홈쇼핑	Data	겸영
7	(주)지에스홈쇼핑	GS홈쇼핑 T-shop	홈쇼핑	Data	겸영
8	(주)농수산홈쇼핑	NS T-Shop	홈쇼핑	Data	겸영
9	케이티하이텔(주)	Paran쇼핑	홈쇼핑	Data	-
10	(주)티브이비록시장	TV비록시장	홈쇼핑	Data	-

(3) (3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영업이익 * 징수율(12%/10%)

②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과거 추세상 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수부과액과 동일하다고 봄)

5.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1)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개요

방송법 제37조 제3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사업으로 인한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8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통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고시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 38 > 위성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개요

대구분	소구분	회사명	징수율 적용 모수	징수율	징수시기
위성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1%	익년 7월 31일 (분할징수 가능)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티유미디어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0%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징수 직전연도(수입계획 수립연도)의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고시된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경우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계획 수립시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boxed{\text{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 \boxed{\text{징수 직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boxed{\text{징수율(1% / 0%)}}$$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위성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추정 과정을 통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징수 직전연도(2008년) 방송 관련 매출액 추정

1. 2007년 실제 방송 관련 매출액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참조
2. 방송 관련 매출액 성장률 추정 : 3.5% (2008년 위성방송사업자 매출액은 물가상승률 수준 성장할 것으로 예상)
3. 2008년 방송 관련 매출액 추정 : 2007년 방송 관련 매출액 * (1 + 성장률)

(2)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1. 2009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2008년 방송 관련 매출액 * 1%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방송 관련 매출액 성장률을 단순하게 3.5%로 추정 ->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임. 매출액 성장률 추세를 이용하거나 시장연구 보고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3) 과거 실적 분석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관련 매출액 및 징수부과액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연도별 방송관련매출액 추이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스카이라이프)의 매 연도 총 매출액 및 방송관련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9 > 스카이라이프 매출액 및 방송관련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매출액	347,274	393,905	387,393	386,958
방송관련매출액	299,463	350,480	357,431	360,815
방송관련매출액 구성비율	86.2%	89.0%	92.3%	93.2%
총매출액 성장률		13.43%	-1.65%	-0.11%
방송관련매출액 성장률		17.0%	2.0%	0.9%

자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감사보고서, 2007년 기금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 위성방송사업자의 연도별 법정부담금 징수율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경우 방송법 부칙 제10조 및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법령상 징수 유예기간(2002~2005)이 종료된 이후에도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2년간 연속하여 부담금 징수가 유예된 바 있다. 최근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2008년부터 전년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1%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법정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인 티유미디어(주)의 경우에도 방송법 부칙 제 10조 및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방송사업개시일부부터 3년간 징수유예 되었으며, 징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9-18에서 0%

의 징수율을 고시하여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

4)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1) 법정부담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개요

위성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1.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2.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 성장률)

2단계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1.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2.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2) (1단계)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① 직전 3개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 파악

②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방송관련 매출액을 이용하여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가중평균 성장률을 이용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징수 직전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 가중평균성장률)
- (대안 2) 시장성장률에 대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이용

* 가중평균 성장률 : 방송관련 매출액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개년간의 방송관련 매출액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표 40 >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중평균성장률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매출액	347,274	393,905	387,393	386,958
방송관련매출액	299,463	350,480	357,431	360,815
방송관련매출액 구성비율	86.2%	89.0%	92.3%	93.2%
총매출액 성장률		13.43%	-1.65%	-0.11%
방송관련매출액 성장률		17.0%	2.0%	0.9%
			최근 3년간 가중평균	3.97%
			최근 2년간 가중평균	1.29%

(주1) 기존 매출규모가 적은 관계로 2006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고려할 필요 있음.

(주2) 최근 3년간 가중평균 : 2008년 가중치 3, 2007년 가중치 2, 2006년 가중치 1로 하여 가중평균한 금액

(주3) 최근 2년간 가중평균 : 2008년 가중치 2, 2007년 가중치 1로 하여 가중평균한 금액

(3) (2단계)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및 현금유입액 추정

① 법정부담금 징수부과액 추정

- 징수부과액 = 징수 직전연도 방송관련 매출액 * 1%

② 법정부담금 현금유입액 추정

- 현금유입액 = 징수부과액 (과거 추세상 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수부과액과 동일하다고 봄)

6. 민간출연금

방송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사업자 출연금을 방송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일 현재 연도별로 납부하기로 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다.

< 표 41 > 민간출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주방송 분할납부액	100	100	100	100	100
경인방송 분할납부액	10	10	10	10	10
지역지상파 DMB 6개권역 사업자(12개사) 분할납부	1,050	-	-	-	-
비수도권 단일권역 DMB사업자(KBS) 분할납부	160	-	-	-	-
	1,320	110	110	110	110

(주1) 청주방송은 2008년~2013년 분할납부, 경인방송은 2009년~2013년 분할납부 예정

(주2) 지역지상파 DMB 6개권역 사업자, 비수도권 단일권역 DMB 사업자 분할납부의 경우 2009년으로 완납

V. 용자원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용자사업 개요

방송발전기금은 용자사업으로 프로그램제작비용자지원과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민간기관에 대한 용자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제작비 용자사업은 프로그램 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용자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디지털방송전환용자사업은 디지털방송의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 표 42 > 프로그램제작비용자와 디지털방송전환용자의 개요

구 분	프로그램제작비용자	디지털방송전환용자
목적	방송콘텐츠 제작, 공급 활성화 및 방송영상분야의 경쟁력 제고	디지털방송전환 촉진 및 디지털방송산업 발전 도모
지원대상	PP, 독립제작사	지역지상파방송사, SO, PP
지원한도	1사당 5억원 이내	지역지상파방송사 및 SO : 20억원 이내 PP : 10억원 이내
개시시점	2005년	2003년
용자금리	연 3.5%(용자취급은행 수수료 1.0% 포함)	전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대출금리 - 0.5%P
상환기간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매칭비율	직접제작비의 90% 범위 내	용자 90%, 자체조달 10%

자료: 2008년, 2007년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민간융자금의 경우 방송법 부칙 제6조 및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자금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연합뉴스에 대한 융자금을 승계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원금을 균등상환(무이자)하는 조건이다.

2. 융자원금 회수액 추계

1) 기존 융자금 실적 및 증감 내역 분석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 실적 및 증감 내역 분석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사업은 2005년 계획 대비 57.4%, 2006년 33.2%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7년에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결과 집행실적이 79.9%로 향상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방송사업자들의 경영여건 악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의 이유로 다시 23.9%로 집행실적이 낮아졌다.

< 표 43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금 증감 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초금액	-	2,871	3,559	3,024
당기융자	2,871	1,326	1,998	478
융자원금회수	-	638	2,533	1,765
기말금액	2,871	3,559	3,024	1,737

< 표 44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집행	집행율	신청자수	선정
2008년	2,000	478	23.9	3	3
2007년	2,500	1,998	79.9	6	5
2006년	4,000	1,326	33.2	8	4
2005년	5,000	2,871	57.4	14	7

(자료: 2008년, 2007년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2)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실적 및 증감 내역 분석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금력이 취약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용자지원을 통해 디지털방송의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지원의 경우 매년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용자를 신청한 19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만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방송 전환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향후에도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표 45 > 디지털방송전환 용자금 증감 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초금액	11,632	22,869	28,048	30,168
당기용자	12,000	11,528	11,974	14,000
용자원금회수	763	6,349	9,854	6,151
기말금액	22,869	28,048	30,168	38,017

< 표 46 > 디지털방송전환 용자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집행	집행율	신청자수	선정
2008년	14,000	14,000	100.0	19	8
2007년	12,000	11,974	99.8	7	7
2006년	12,000	11,528	96.1	10	9
2005년	12,000	12,000	100.0	20	9

(자료: 2008년, 2007년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3) 기타민간용자

기타민간용자금의 경우 방송법 부칙 제6조 및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자금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연합뉴스에 대한 용자금을 승계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원금을 균등상환(무이자)하는 조건이다.

< 표 47 > 기타민간 용자금 증감 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증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초금액	4,000	3,200	2,400	1,600
당기용자	-	-	-	-
용자원금회수	800	800	800	800
기말금액	3,200	2,400	1,600	800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용자원금 회수액은 용자 종류별(프로그램제작비용자, 디지털방송전환용자, 기타민간용자)로 만기회수액과 조기상환액을 추정하여 산정된다.

$$\boxed{\text{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프로그램제작비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디지털방송전환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기타민간용자원금 회수액}}$$

$$\boxed{\text{용자원금 회수액}} = \boxed{\text{만기회수액}} + \boxed{\text{조기상환액}}$$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용자원금 회수액 추정 과정을 통하여 용자원금 회수액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만기회수액 산정

1. 용자연도별 용자금액의 만기상환구조 파악
 - 프로그램제작비용자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디지털방송전환용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타민간용자 : 2009년까지 분할상환
2. 추정대상연도(2009년)에 만기 도래한 금액 파악
 - 2008년 용자금액 중 2009년 만기도래분
 - 2007년 용자금액 중 2009년 만기도래분
 - 2006년 용자금액 중 2009년 만기도래분 등

(2) 조기상환액 추정

1. 추정대상 직전연도 (2008년) 용자계획 파악
2. 2008년말 용자금액 추정 : $2008년말 용자금액 = 2008년초 용자금액 + 2008년 용자금액 - 2008년 만기회수액$
3. 조기상환액 추정 : $조기상환액 = 2008년말 용자금액 추정치 * 5\%$
(2008년 용자예상액 중 5%가 2009년에 조기상환될 것으로 가정)

(3) 용자원금 회수액 추정

1. 용자원금 회수액 추정 : $용자원금회수액 = 만기회수액 + 조기상환액$

용자원금 회수액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조기상환비율을 단순하게 5%로 추정하고 있음. 과거 실제 조기상환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3) 수정 용자원금 회수액 추계방법

(1) 용자원금 회수액 추계방법 개요

용자원금 회수액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용자금 만기구조 파악

1.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 만기구조 파악
2. 직전연도 용자금 지출계획의 만기구조 파악

2단계 : 직전연도 조기상환액 추정 및 만기구조 파악

1. 평균 조기회수율 추정
2.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추정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 직전연도 기초용자금 * 평균 조기회수율
3. 직전연도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조기회수액은 그 이후 각 연도 별로 만기 회수될 금액이 조기회수된 금액임)

3단계 : 만기회수액 추정

1. 만기회수액 추정 : 만기회수액 = 만기회수 예상액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중 대상연도 만기회수예상분

4단계 : 조기회수액 추정

1. 대상연도 기초 용자금 추정 : 대상연도 기초 용자금 =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 + 직전연도 용자금 - 직전연도 만기회수액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2. 조기회수액 추정 : 조기회수액 = 대상연도 기초 용자금 * 조기회수율

(2) (1단계) 융자금의 만기구조 파악

① 직전연도 기초 융자금의 만기구조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통하여 직전연도 기초 융자금의 만기구조 파악

< 표 48 > 융자종류별 직전연도 기초 융자금의 만기구조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제작비용자	융자금 잔액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8년 융자금액	478	60	239	179	-	-
2007년 융자금액	1,137	650	487	-	-	-
2006년 융자금액	122	122	-	-	-	-
합계	1,737	832	726	179	-	-
금액비율	100.0%	47.9%	41.8%	10.3%	0.0%	0.0%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융자금 잔액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8년 융자금액	14,000	-	1,167	4,667	4,667	3,500
2007년 융자금액	11,974	898	3,991	3,991	3,094	-
2006년 융자금액	7,372	2,864	3,260	1,248	-	-
2005년 융자금액	3,298	2,133	1,165	-	-	-
2004년 융자금액	1,373	1,373	-	-	-	-
합계	38,017	7,268	9,583	9,906	7,761	3,500
금액비율	100.0%	19.1%	25.2%	26.1%	20.4%	9.2%

자료: 기금 제공 융자금 명세

② 직전연도 융자금 지출계획의 만기구조 파악

- 직전연도 융자금 지출계획에 대한 만기구조 파악
- 프로그램제작비용자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디지털방송전환용자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과거 추세를 감안하여 4분기 융자지원, 분기별 상황을 가정

(3) (2단계) 직전연도 조기상환액 추정 및 만기구조 파악

① 평균 조기회수율 추정

- 직전 3개년간 실제 조기회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조기회수율을 추정함.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과거 조기회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조기회수율 산정

- (대안 2) 조기회수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평균조기회수율 산정

< 표 49 > 용자종류별 용자금 대비 조기회수비율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제작비 용자	2006년	2007년	2008년
만기회수	638	1,195	967
조기상환	-	1,338	798
소계	638	2,533	1,765
전기말 용자금 대비 조기회수비율	0.0%	37.6%	26.4%
		최근 2년간 가중평균 비율	30.12%

디지털방송전환 용자	2006년	2007년	2008년
만기회수	3,216	4,102	6,151
조기상환	3,133	5,752	-
소계	6,349	9,854	6,151
전기말 용자금 대비 조기회수비율	13.7%	20.5%	0.0%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비율	9.12%

자료: 기금 제시 명세,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주1) 프로그램제작비 용자의 경우 2005년부터 용자가 개시되어 거치기간 1년 경과 후 2006년 하반기부터 정상회수되고 있어, 2007년 이후 조기회수율을 기준으로 파악함.

(주2) 디지털방송전환 용자의 경우 2003년부터 용자가 개시되어 거치기간 2년 경과 후 2005년 하반기부터 정상회수되고 있어, 2006년 이후 조기회수율을 기준으로 파악함.

②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추정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 * 평균 조기회수율

③ 직전연도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 조기회수액은 그 이후 각 연도별로 만기 회수될 금액이 조기 회수된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용자금의 각 연도별 회수예상액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상기 < 표 48 > 용자종류별 직전연도 기초 용자금의 만기구조 금액 비율 참조)

- (대안 2) 조기회수 건별로 조기회수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조기회수액의 만기구조 추정 : 조기회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4) (3단계) 만기회수액 추정

① 대상연도 만기회수액 추정

- 직전연도 기초 융자금 중 대상연도 회수예상액
- (+) 직전연도 융자금 지출계획 금액 중 대상연도 회수예상액
-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중 대상연도 만기회수예상분이 조기회수된 금액

(5) (4단계) 조기회수액 추정

① 대상연도 기초 융자금 추정

- 직전연도 기초 융자금
- (+) 직전연도 융자금 지출계획
- (-) 직전연도 만기회수액
- (-) 직전연도 조기회수액

② 대상연도 조기회수액 추정 : 대상연도 기초 융자금 * 평균 조기회수율

3. 융자금 이자수입 추계

1) 융자금 이자수입 현황 분석

융자금 평균잔액 대비 융자금 이자수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의 경우 조기상환의 비중이 높아 다른 연도에 비해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 표 50 > 융자금 평잔 대비 이자수입 비율

(금액: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프로그램제작비 융자금 평균	718	3,043	3,425	2,702
디지털방송전환 융자금 평균	14,441	24,164	28,578	32,130
	15,159	27,207	32,003	34,833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22	930	929	1,244
	3.4%	3.4%	2.9%	3.6%

(주) 융자금 평균잔액 산출 시 융자금이 대부분 4분기에 지출 및 회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산정함 : 기초 융자금 + 당기 융자지출/4 - 당기 융자회수/4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융자금 이자수입 추정은 융자종류별로 융자금 평균잔액을 추정한 후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이자수입	=	프로그램제작비용자금 평균잔액	+	대출고정금리(2.5%)
디지털방송전환융자금 이자수입	=	디지털방송전환융자금 평균잔액	+	추정금리(3.3%)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융자금 이자수입(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추정 과정을 통하여 융자금 이자수입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융자금 평균잔액 추정

1. 융자금의 평균잔액 추정

- 프로그램제작비용자 : 과거 3년(2006~2008) 대출평균
- 디지털방송전환융자 : 과거 5년(2004~2008) 대출평균

(2) 융자금 이자수입 추정

1. 수입이자율 추정

- 프로그램제작비용자 : 2.5% 고정금리 (대출금리 3.5%, 대하금리 2.5%)
- 디지털방송전환용자 : 2009년 추정금리(3.3%)

2. 융자금 이자수입 추정 : 이자수입 = 융자금 평잔 * 수입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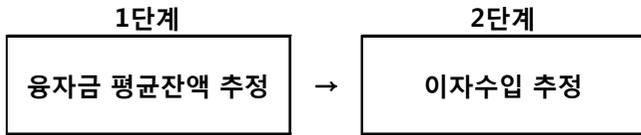
융자금 이자수입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이자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융자금 평균잔액은 대상기간동안의 평균잔액을 이용하여야 하나, 과거 3년 및 5년 동안의 평균잔액을 이용하고 있음 - 융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융자금 평균잔액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이유로 대상기간 동안의 신규용자 및 회수 실적이 고려되지 않음
- 조기회수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수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융자의 대부분이 4사분기에 발생하고 있으나, 융자시기, 회수시기가 이자수입 추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융자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1) 융자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개요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용자금 평잔 추정

1. 용자금 증감현황 파악
2. 대상연도 용자금 평잔 추정

2단계 : 이자수입 추정

1. 수입이자율 추정
2. 용자금 이자수입 추정 : 용자금 이자수입 = 용자금 평잔 * 수입이자율

(2) (1단계) 용자금 평균잔액 추정

- ① 용자계획, 회수계획(만기, 조기)이 반영된 용자금 증감현황 추정
 - 용자금 회수액 추정 단계에서 산정한 용자금 증감현황 이용
- ② 용자금 평균잔액 추정
 -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 고려
 - (대안 1) 대부분의 용자가 4사분기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용자금 평잔 산정, 조기회수는 연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
 - 용자금 평잔 = 기초 용자금 + 당기 용자지원액/4 - 만기회수액/4 - 조기회수액/2
 - (대안 2) 용자, 회수 시점에 상관없이 기초, 기말 단순 평균
 - 용자금 평잔 = (기초 용자금 - 기말 용자금)/2

(3) (2단계) 용자금 이자수입 추정

- ① 용자금 종류별 적용이자율 검토
 - 프로그램제작비용자 : 대출금리 3.5% 고정, 대하금리 2.5%

- 디지털방송전환용자 : 전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대출금리 - 0.5%p

②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검토

-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대출금리 추이 분석
- 취급은행수수료, 기술보증수수료 등

③ 수입이자율 추정

④ 이자수입 추정 : 이자수입 = 용자금 평잔 * 수입이자율

VI.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공공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개요

방송발전기금은 2003년에 100억원, 2004년에 3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기금”)에 예탁하였으며, 2008년 중에 100억원, 2009년 중에 300억원의 예탁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방송발전기금이 공공기금에 예탁한 금액의 증감현황과 공공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51 > 공공기금 예탁원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초금액	-	1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당기 예탁	10,000	30,000	-	-	-	-
예탁원금 회수	-	-	-	-	-	10,000
기말금액	10,000	40,000	40,000	40,000	40,000	30,000

< 표 52 > 공공기금예탁금이자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평균	40,000	40,000	40,000	37,500
공공기금예탁금이자수입	1,700	1,995	2,045	2,120
	4.3%	5.0%	5.1%	5.7%

자료: 방송발전기금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주) 2008년 평균잔액 추정시에는 4사분기 예탁금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공기금에 대한 신규 예탁금 3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2.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은 용자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한다.

- 만기, 이자율이 거의 확정적이므로 개별 건별로 추정. 다만, 공공기금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조기회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공공기금의 예탁시점이 대부분 4사분기이므로 예탁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정시 고려.

1단계 : 공공기금 예탁금 회수액 추정

1. 직전연도 기초 공공기금 만기구조 파악
2. 직전연도 공공기금 예탁금 지출계획의 만기구조 파악
3. 대상연도에 회수되는 공공기금 파악

2단계 : 공공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추정

1. 공공기금 증감현황 추정
2. 공공기금 평균잔액 추정
3. 수입이자율 추정
4. 이자수입 추정 : $\text{이자수입} = \text{공공기금 평균잔액} * \text{수입이자율}$

VII.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추계방법

1. 예치금(금융자산) 개요

방송발전기금 금융자산 규모는 2008년말 현재 254,280백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의 105.1%에 해당되고 있으며, 수입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실적 등으로 인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여유자금을 제1금융권(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증권사, 투신사 등)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확정 금리형 상품의 운용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과에서 제안서 등을 접수 및 검토하여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펀드, 채권 등 수익증권)의 운용은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제1금융권에 예치한 예치금의 경우 통화금융기관예치금으로 분류되며, 제2금융권에 예치한 예치금의 경우 기타민간예치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 표 53 > 연도별 금융자산 증가율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금운용규모	231,581	232,099	254,414	241,851
증가율	△ 2.0%	0.2%	9.6%	△4.9%
금융자산	189,175	175,651	208,421	254,280
증가율	1.2%	△7.1%	18.7%	22.0%
금융자산비율	81.7%	75.7%	81.9%	105.1%

자료: 2008년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주) 금융자산 : 금융기관 예치 중인 자금 등 포함, 공자기금 예탁분 제외, 단 해당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음

또한 방송발전기금은 1년 단위로 검토, 수정되어지는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결정된 장단기 투자비중,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의 범위 내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 운용자금 : 1년 기준으로 단기자금(현금성자금 + 유동성자금)과 장기자금으로 분류
- 목표수익률 : 단기자금목표수익률(6개월미만 정기예금 수익률, 4.31%)과 장기자금목표수익률((국고채 1년 유통수익률+국고채 3년 유통수익률)/2, 5.00%)의 가중평균수익률(4.93%)
- 2008년 자산배분안 : 단기 30%(실적배당 20% 포함), 장기 70%
- 2010년 목표 자산배분안 : 단기 7%, 장기 93%

2008년과 2007년 방송발전기금 금융자산 구성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금융자산 중 34%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고, 66%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 2007년의 경우보다 확정금리형 상품에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음
-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년 미만에 75%를 투자하고, 1년 이상에 25%를 투자하고 있으며, 기타민간예치금의 경우 1년 미만에 90%를 투자하고 1년 이상에 10%를 투자하고 있음 - 2007년의 경우보다 장기상품에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음. 또한 제1금융권에 대한 1년 이상 투자가 제2금융권에 대한 1년 이상 투자보다 많음
-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음.

< 표 54 > 금융자산의 구성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실적배당 포함		실적배당제외		장단기 비율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잔존기간 1년 미만	87,200	90,600			100.0%	74.5%	75 대 25
	잔존기간 1년 이상	-	31,000			0.0%	25.5%	
		87,200	121,600	72.4%		100.0%	100.0%	
기타민간예치금	잔존기간 1년 미만	30,620	41,400			100.0%	89.2%	90 대 10
	잔존기간 1년 이상	-	5,000			0.0%	10.8%	
	소계	30,620	46,400	27.6%		100.0%	100.0%	
	실적배당	89,200	86,280					
		119,820	132,680					
합계	잔존기간 1년 미만	117,820	132,000	56.9%	51.9%	100.0%	78.6%	
	잔존기간 1년 이상	-	36,000	0.0%	14.2%	0.0%	21.4%	
	소계	117,820	168,000	56.9%	66.1%	100.0%	100.0%	
	실적배당	89,200	86,280	43.1%	33.9%			
		207,020	254,280	100.0%	100.0%			

자료: 기금 제시 2008년말, 2007년말 금융자산 명세

(주) 2007년 금융자산의 경우 < 표 54 >와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분석에는 큰 영향 없음

2. 예치금 회수액 추계

방송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액과 기타민간예치금 회수액의 경우 수입계획과 실제 수입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운용계획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 표 55 > 예치금 회수액 수입계획 대비 실적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실적 심사중)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계획	실적	차액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70,420	70,420	-	72,876	72,876	-	52,389	52,389	-	47,578	47,578	-
(85) 정부예금회수	70,420	70,420	-	72,876	72,876	-	52,389	52,389	-	47,578	47,578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0,420	70,420	-	34,835	34,835	-	46,349	46,349	-	29,804	29,804	-
기타민간예치금회수	-	-	-	38,041	38,041	-	6,040	6,040	-	17,774	17,774	-

자료: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심사보고서

3. 예치금 이자수입 추계

1) 예치금 이자수입 현황 분석

예치금 평균잔액 대비 예치금 이자수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까지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획득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함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목표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 표 56 >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금액: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 규모	192,153	194,800	194,523	225,385
운영 수익	8,275	8,729	10,094	9,759
수익률(%)	4.30%	4.48%	5.18%	4.33%
목표수익률(%)	3.80%	3.80%	4.93%	4.93%

자료: 2008년 기금결산 심사보고서

2) 기존 추계방법 및 검토사항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은 여유자금의 평균잔액을 추정한 후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boxed{\text{예치금 이자수입}} = \boxed{\text{여유자금 평균잔액}} * \boxed{\text{수입이자율(5.31\%)}}$$

2008년에 수립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예치금 이자수입(기타재산 수입) 추정 과정을 통하여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1) 예치금 평균잔액 추정

1. 2008년말 예치금 전망치 추정
2. 2009년말 예치금 전망치 추정
3. 예치금 평균잔액 추정 : $\text{평균잔액} = (\text{2008년말 예치금 전망치} + \text{2009년말 예치금 전망치}) / 2 * 50\%$

(2)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1. 수입이자율 추정 : 5.31%
2.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 $\text{이자수입} = \text{예치금 평잔} * \text{수입이자율}$

* 수입이자율 추정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상의 목표수익률 산정 로직에 따라 산정)

- 목표수익률 :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 투자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목표수익률 산정 = $5.49\% * 0.1 + 5.29\% * 0.9 = 5.31\%$
- 단기자금목표수익률 : 6개월미만정기예금수익률(5.49%)
- 중장기자금목표수익률 : $(\text{국고채1년유통수익률} + \text{국고채3년유통수익률}) / 2 = (5.26\% + 5.32\%) / 2 = 5.29\%$
- 단기자산 및 중장기자산 분류 : 10%(단기) 대 90%(중장기)

예치금 이자수입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실제 투자자산의 장단기 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 산정시의 장단기 투자비율이 다소 상이함
 - 실제(2008년 기준) : 총자산의 34%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나머지 자산의 78.6%를 1년 미만 자산에, 21.4%를 1년 이상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 기준수익률은 전체 여유자산을 대상으로 10%는 단기, 90%는 장기

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 예치금 평균잔액 산정시에 다음과 같은 평균잔액 산정 공식에 의해 이자수익이 과소계상되고 있음
 - 예치금 평잔 = (2008년말 여유자금 전망치 + 2009년말 여유자금 전망치) / 2 * 50%

3) 예치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1) 예치금 이자수입 수입추계 개선방안 개요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 직전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1. 직전연도초 예치금 잔액 및 만기구조 파악
2. 직전연도 동안 예상되는 수입계획 집계 (예치금 이자수입 포함)
3. 직전연도 동안 예상되는 지출계획 집계 (여유자금운용 제외)
4. 직전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2단계 : 대상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1. 대상연도초 예치금 잔액 추정
2. 대상연도 동안 예상되는 수입계획 집계
3. 대상연도 동안 예상되는 지출계획 집계 (여유자금운용 제외)
4. 대상연도말 예치금 잔액 추정

3단계 : 장단기예치금 평균잔액 추정

1. 각 연도말 예치금 금액을 확정금리형(단기), 확정금리형(장기), 실적배

당형 예치금으로 구분 :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상의 목표자산배분안에 따라 배분

2. 장단기 예치금 평균잔액 추정 : (기초예치금 + 기말예치금) / 2

4단계 :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1. 예치금 종류별 장단기 수익률 추정 :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상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추정

2. 예치금 이자수입 추정 : \sum (예치금 종류별 예치금 평잔 * 수익률)

VIII. 기타사항

1.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도출

-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방송발전기금의 향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디지털 전환, FTA 체결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 등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음
-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재추정하여 중기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유자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실적을 높여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도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 기금 수입규모 산출

1) 법률안 제안 이유

-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

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금과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또는 “방송통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pp. 222~223)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함 :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 2008년 12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접수
- 2008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09년 4월 17일 소관 위원회 심사 상정
- 2008년 12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입법예고된 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인 상태이며, 통과여부 및 통과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주요 내용

-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안 제2조)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안 제3조 및 제4조)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안 제8조 및 제11조)
- 방송통신 진흥 및 인력양성 등(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방송통신 재난관리(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4)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된 규정(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방송의 디지털전환 등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방송통신의 재정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에 의해 설치
- ‘전과법’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과 방송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에 관한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제24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
- 기금의 조성(제25조)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2. ‘전과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 제1항(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과수 할당 대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분담금
 -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분담금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의 용도(제26조) :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및 남북 교류, 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15.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 기금의 관리, 운용(제27조) :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운용함.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9-13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일 2009년 12월 (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세종로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인 쇄 처 선우기획
